

최종보고서

##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2008. 12

提出文

한국무역협회 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 연구陣

# 목 차

## <연구책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명철

##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지연

## <원의연구진>

건국대학교      교 수      박광서

제1장 서론 ..... 1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및 관리체계 ..... 5

1.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평가 ..... 5
  - 가. 대외무역 ..... 5
  - 나. 투자유치 ..... 9
2.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 11
  - 가. 무역제일주의와 실리증시 ..... 11
  - 나. 7·1조치 이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 16
3. 북한의 대외경제 관리체계 ..... 22
  - 가. 대외무역 관리체계 ..... 22
  - 나. 외국인투자 관리체계 ..... 35
  - 다. 외환 관리체계 ..... 38
  - 라. 경제특구 관리체계 ..... 43
  - 마. 남북경협 관리체계 ..... 45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 조사 및 남북한 비교 ..... 50

1. 북한의 무역관련 법률용어 ..... 50
2.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용어 ..... 60
3. 북한의 기타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 ..... 68
4.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법률용어 ..... 74
5. 평가 및 문제점 ..... 75

제4장 남북한 무역실무 분야별용어 비교 ..... 79

1. 무역일반 ..... 79
2. 무역계약 ..... 84
3. 무역통관 ..... 91
4. 무역운송 ..... 93

5. 무역보험 .....	103
6. 무역결제 .....	110
7. 기타 .....	115
8. 평가 및 문제점 .....	117

**제5장 남북한 무역용어의 표준안 수립방안 및 정책과제 ..... 122**

1. 법적 제도적 과제 .....	122
2. 정부차원의 과제 .....	123
3. 기업차원의 과제 .....	125

**참고문헌 ..... 128**

**표 목차**

<표 2-1> 북한의 10대 무역대상국 .....	6
<표 2-2> 북한·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	9
<표 2-3> 외국인 투자기업 비교 .....	38
<표 2-4> 북한 경제특구의 특징 및 관리체계 비교 .....	44

**그림목차**

<그림 2-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	5
<그림 2-2> 북한의 품목별 수출비중 .....	8
<그림 2-3> 북한의 품목별 수입비중 .....	8
<그림 2-4> 북한 무역성 기구체계 .....	27

**요 약**

**1. 서론**

-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간에 무역용어의 통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과거 남북교역에서 용어상의 불일치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
- 특히 교역과 투자에서 용어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제도적 보완과 대응장치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용어통일임.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무역용어의 비교를 통해 공동의 표준안 작성을 위한 방안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 상의 각종 법률상의 용어와 무역실무 용어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남한 관련 용어와의 비교연구를 하였음.

**2.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 조사 및 남북한 비교**

- 주요 분석대상 법률
  - 무역관련 법률용어의 대상이 된 북한의 관련법은 ▲무역법 ▲공무무역법 ▲세관법 ▲원산지명법 등임.
  - 북한의 투자용어 관련 분석 법률은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병법 시행규정 ▲합작법 ▲합작법 시행규정▲외국인기업법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등임.

- 기타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의 대상 법률은 ▲외화관리법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대외민사관계법 ▲저작권법 등임.
- 남북경협 관련 대상 법률은 북남경제협력법과 4대 경협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창산결제)임.

□ 남북한 간의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함.

- 우선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이 남한에 비해 개방수준은 물론 경제발전 수준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으로써, 남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지만 북한에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또한 남북한 간의 경제체제와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용어라 해도 실제 의미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이와 함께 북한의 경우 전자상거래, 원산지증명, 지적재산권 등의 최근 국제무역 규범이나 변화 등과 관련된 법률제정이 미흡하거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련 용어의 경우 남북한 간의 용어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됨.

□ 남북한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하나는 남북이 상이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의미 전달과 무역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임.
- 다른 하나는 남북한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나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그 의미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 사업에서 오해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임.

□ 우선, 남북한이 상이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임.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협외'는 남한의 '합외'를 의미함.
  - o 즉, 북한의 '협외'는 상사분쟁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한의 합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o 반면, 남한에서 협외는 양측의 이견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합의와는 차이가 있음.
  - o 따라서 합의서 작성 및 해석에 있어 협외를 북한은 사실상 합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북한의 '외화준비'는 남한의 '외환보유고'를 의미함.
  - o '외화준비'는 국가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에 대한 외화지불을 위해 준비하는 외화나 금으로 남한의 '외환보유고'를 말함.
  - o 개별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외환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님.

- 북한의 '은행거래 협정'은 남한의 '환거래 계약'(코레스 계약)을 의미함.
  - o 북한의 '은행거래 협정'은 외국환 전문은행이 세계 여러 은행과 외국환 전반에 걸쳐 맺는 계약임.
  - o 이를 단순히 은행 구좌거래 정도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북한의 '공업소유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인 '산업재산권'을 의미함.
  - o 북한의 '공업소유권'을 공장 건물이나 설비 등과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북한에서 '봉사'는 '서비스'나 '용역'을 의미함.
  - o 남한의 경우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로, 비경제적인 용어임.

□ 남북한이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의 차이로 인한 문제보다는 동일한 용어의 의미차이로 인한 문제가 현장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용어자체가 다른 경우 합의서에 남북한의 용어를 병기하거나 영문을 병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동일한 용어의 경우 합의서나 계약서 체결 당시 큰 문제가 없다가 이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면, 북한의 '국내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계획경제 하에서 국가가 대외무역 거래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해서 제시한 것을 의미함.
  - o 이는 남한의 국내가격처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서 내린 기준가격임.
  - o 가격과 관련된 의미상의 차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o 남북한 모두 '무역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남한의 경우 국제 및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국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한 무역가격을 의미함.
- 또한 남북한 모두 '교역조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o 북한에서 '교역조건'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변동으로 각국이 무역에서 보게 되는 손익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o 반면, 남한에서는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또는 제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따라서 교역조건이 단순히 무역의 손익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및 수입에 있어 무역경쟁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남북한 간에는 무역용어 상의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시장경제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대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해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북한은 대외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 간의 무역관련 법률 및 제도상의 용어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북한의 대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무역용어가 점차 확대될 것이며, 무역발전 초기 단계에 남한의 무역용어가 남북한의 통일무역용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자료를 북한에게 제공하고, 용어통일을 위한 남북한 간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함.

### 3. 남북한 무역실무 분야별 용어 비교

#### 북한 무역실무 용어의 특징

- 북한은 대외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무역용어의 수(數)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통용되는 무역용어도 부족함.
- 북한의 무역실무 용어들은 남한의 영어 또는 한자식 표현과는 달리 우리 말을 활용하여 '풀어쓰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남한의 무역실무 용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면에 북한의 무역용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임.
- 결국, 남북한 간 무역용어의 차이는 기본적인 일상어의 차이가 무역용어에도 동일하게 존재는 정도로 평가됨.

#### 남북한 무역용어의 수(數)는 남북한 간 무역발전의 정도 및 자료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양측 사이에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오랜 자급경제체제로 인하여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무역용어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외부에 공개된 무역관련 자료도 거의 없음.
- 북한에서 사용하는 무역서식 등은 대부분 남한 기업인과의 거래에서 활용되었던 자료로서 남측의 서식과 대체로 유사함.
- 북한과 거래하려는 대부분의 사업자(한국 또는 제3국)들은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서식을 제공하고 북측의 검토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적인 국제무역규칙과 무역용어는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의 무역업자(무역일꾼)들도 국제상관습으로 정착되어 있는 국제무역규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 북한 무역업자들도 대외거래를 위하여 UCP, INCOTERMS등 국제규칙을 잘 알고 있으며, L/C, FOB 등의 영어식 무역용어 표현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남북한 무역실무 용어는 실제 활용에 있어 전혀 다른 용어나 동일한 용어라도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우선, 남한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무역실무 용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북한의 '방조'는 남한의 '협력'을 의미함.
  - o 남한에서 방조는 부정적인 의미인 반면에 북한의 방조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됨
- 북한의 '중개'는 남한의 '알선(Intermediation)'을 의미하기도 함.
  - o 남한에서는 중개와 알선의 개념은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음.
- 북한의 '무관세(특권)'는 남한의 '관세양허'를 의미함.

□ 북한에만 있는 용어로 남한에서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 북한의 '수형'은 남한의 '어음' 또는 '서명'을 의미
- 북한의 '행표'는 남한의 '수표'를 의미
- 북한의 '러행행표'는 남한의 '여행자수표'를 의미
- 북한의 '류동고'는 남한의 '계좌'를 의미
- 북한의 '날인세' 또는 '각인세'는 남한의 '인지세'를 의미함

□ 한편, 북한에만 있는 용어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

- 북한의 '배집증권'은 남한의 '선하증권'을 의미
- 북한의 '맞바꿈무역'은 남한의 '구상무역'을 의미
- 북한의 '맞수입'은 남한의 '대응구매'를 의미
- 북한의 '돈자리'는 남한의 '계좌'를 의미
- 북한의 '비무역거래'는 남한의 '무역외거래'를 의미
- 북한의 '현금환자시세'는 남한의 '환율'을 의미
- 북한의 '규약'은 남한의 '정관'을 의미
- 북한의 '거래수익금거래세'는 남한의 '부가가치세'를 의미
- 북한의 '공업도안권'은 남한의 '디자인권'을 의미

□ 북한 특유의 풀어쓰는 무역용어

- 북한의 '무역의 다각화'는 남한의 '다각무역'을 의미
- 북한의 '계획적인 행동'은 남한의 '담합행위'를 의미
- 북한의 '가격산출(서)'는 남한의 '견적(서)'를 의미
- 북한의 '무역사고청구'는 남한의 '무역클레임'을 의미
- 북한의 '지함(주름판지지함)'은 남한의 '골판지박스'를 의미
- 북한의 '실림 배집증권'은 남한의 '선적선하증권'을 의미

□ 외래어를 실무에서 받아들여 사용하는 용어

- 북한의 '가격플러스마이너스조건'은 남한의 '가격증감약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영어식 표현은 실무현장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판단됨.

□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남북경협 과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나 관련 북한법률의 해석에 있어 무역용어의 신중한 사용이 필요함.

- 무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되는 경향이 크며, 이러한 용어들이 법률에 사용될 때 공식적인 용어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 남북한 간 통일된 무역용어를 위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 및 법률의 제·개정 시 통일된 용어사용을 위한 노력과 합의가 필요함.

- 무역은 국제거래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통일무역용어로 사용되어야 함.
  - o 남한의 무역용어는 상당부분 국제표준과 일치되며, 국제표준 용어 활용으로 남한의 무역용어가 남북거래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

□ 무역거래자 입장에서 북한과의 무역업무 수행 및 계약체결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에 직결되므로 남북간 의사 불일치로 인한 손해 및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용어관련 합의가 필요함.

- 계약서 한 조항으로 용어정의 및 불일치의 경우 준거법·규칙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간 무역용어 사용 시 주요 용어에 대한 영어병기가 필요하고, 당사자 간 불일치의 경우 국제규칙에 따라서 해석됨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남북한 무역용어의 표준안 수립방안 및 정책과제

□ 법적·제도적 과제

- 남북한간 교역의 지속적인 증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교역환경을 급격히 바꾸어 야 하는 바,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남북한간 무역용어 통일을 이루어 내어 의사소통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용어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제도수립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함.

- 첫째, 남북한 사이의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둘째, 남북한 무역용어통일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연구 및 법률초안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셋째, 남북한 교역이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에 맞게 용어 통일을 지향하되 우선 법률에서 제정한 법적 정신에 맞게 교역관련 하위규정들을 대폭 손질해야 함.

- 넷째, 먼저 수정을 추진하고 남북교역이 활성화 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지속적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은 남북한 사이의 거래를 증가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교역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과 규정들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간 상충되는 규정부문들을 조정하며 간소화 할 것은 간소화 하고 철폐할 수 있는 것은 대담하게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함.

- 여섯째, 우리가 먼저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에 관한 법률초안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유도해 내며 공식적인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협정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함.

□ 정부차원의 과제

- 첫째, 모든 남북회담에서 용어통일을 위한 문제제기를 하고 합의된 용어 만이라도 최우선 사용하는 관행을 정착
- 둘째, 남북경협 현장에서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정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용어 불일치로 인한 남북교역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논쟁하며 대세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셋째, 통일부나 지식경제부 내에 지금부터 전문 담당관을 임명하고 광범위한 사전조사와 대안 연구를 하며 해외에서 조사와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찾아 나서는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각국 주재, 외교공관, 국제기구들에서 북한 공관이나 기구들과의 협상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도 무역용어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다섯째, 남북한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용어 통일을 위한 가칭 '남북한 무역용어통일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여섯째,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추진과 함께 용어통일을 위한 연구와 통합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나가야 함.

□ 기업차원의 과제

- 첫째, 무역용어 통일의 요구자도 기업이고 수혜자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무역용어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둘째, 기업은 무엇보다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대국회 및 대정부 설득 노력을 해야 함.
- 셋째, 북한당국과 무역기관 및 회사를 상대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설득과 협상을 추진해야 함.

- 넷째, 무역협회가 주도하여 대북교역 관련단체들이 남북한간 각종 세미나, 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분위기를 만들고 실천과제들을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관련 법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해야 함.
- 다섯째, 기업들에서 북한의 무역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여섯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무역협회가 주도하고 우리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남과 북의 무역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남북교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면서 무역관련 정보교환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용어 연구나 통일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일곱째, 남북한 관계의 진전여부를 보아가면서 무역협회나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과 북한의 무역기관들 사이에 인력 파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해 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 제1장 서론

- 과거 남북교역은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음.
  - 물자교역이 시작된 첫해인 1989년에 1,870만 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무려 약 13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교역품목도 초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고 교역형태도 단순 거래형식에서 부터 시작하여 위탁가공형식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북핵문제의 진전과 함께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한국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도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한 간에는 이미 경험관련 4개 합의서가 발효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핵문제의 해결, 북한개방과 더불어 남북경협은 향후, 임가공의 증가, 제도적 장치의 원활한 가동,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교역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북투자의 경우도, 철도·도로연결을 비롯한 남북한 간의 물류·인프라체계 연계를 위한 남한의 투자가 확대되고,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신정부가 추구하는 5대 특구개발과 맞물리면서 남북한 간의 생산요소 이동이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 남북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간에 무역용어의 통일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과거 남북교역에서 용어상의 불일치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

- 특히 교역과 투자에서 용어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제도적 보완과 대응장치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였음.
- 남북교역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용어 통일임.
  -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이루어 내지 않고서는 교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고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없으며, 결국 무역 확대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향후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을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도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절실히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무역용어의 비교를 통해 공동의 표준안 작성을 위한 방안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 상의 각종 법률상의 용어와 무역실무 용어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남한 관련 용어와의 비교연구를 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대외통상 정책 및 제도, 관리체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현재 북한의 대외 통상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북한의 대외통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북한의 대외통상 정책 및 조직,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본 과제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남북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보다 실증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북한에서 무역 및 대외경제업무는 내각의 무역성과 일부 외무성이 담당하고 있음.
  - 무역성은 경제협조관리국, 대외건설관리국, 지방무역지도국, 법규국, 계획

국, 무역대표부의 공식적 기구와 함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대의 경제협력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과 같은 비상설적 기구들을 두고 있어 권한과 업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1990년대 하반기 이후 무역기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지역별 담당체계의 확립, 실용적인 테크노크라트를 진진 배치 등을 통해 조직체계가 변경되어 북한 무역기구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특히 북한의 무역 및 관세제도의 정확한 이해는 남북한 간에 향후 추진될 무역용어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둘째, 남북한 무역용어를 전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과거 남북한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언어, 용어, 관습, 규정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이질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경제협력 현장에서의 언어나 용어상의 불일치 및 상이한 해석은 협과정에서의 상호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거나, 경험의 비효율성 및 계약 이행 차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 실제 많은 남북경협 참여기업들이 용어상의 불일치나 의미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의향서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른 무역용어에 대한 비교연구 및 통합용어의 작성은 남북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무역현장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셋째, 남한의 대응과제 및 대정부 정책제언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남북한 간의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우리정부의 대응과제를 분석하여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남북경협이 조만간 직면하게 될 제도적, 정치적, 외교통상적 문제를 살펴봄으로서, 우리정부의 실무적인 정책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중점을 두고자 함.

- 이밖에 남북한 간의 무역용어통일을 위한 국제규범적인 측면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와 함께, 남한과 북한이 국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법제도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및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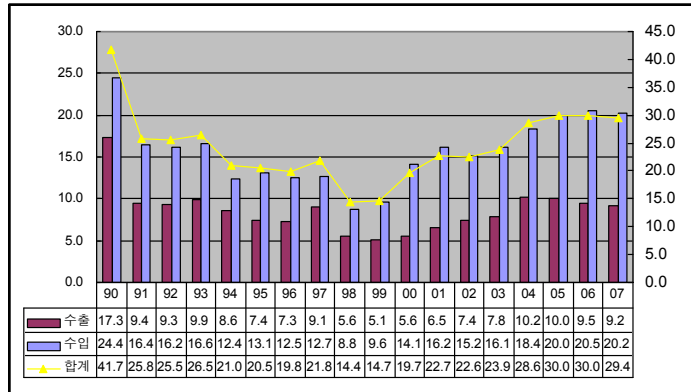
### 1.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평가

#### 가. 대외무역

- 북한의 대외무역은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체의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2-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

- 1998년에는 14억 4,219만 달러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1999년부터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체 생산가동률의 증가, 대중국 무역의 확대 등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2005년에는 무역총액이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구소련의 붕괴로 청산결제가 폐지된 이후 최대 규모였음.1)

1) KOTRA,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2007. 6), p. 5.

- 2006년에는 전년대비 0.2% 감소한 29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5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조치 및 개별국 차원의 대북 제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07년에도 29억 4,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함으로써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음.
  - o 수출은 3.0% 감소한 9억 1,900만 달러로 3년 연속 감소하였음.
  - o 수입은 1.3% 감소한 20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수입은 2002년 이후 처음 감소하였음.

<표 2-1> 북한의 10대 무역대상국

(단위: 천 달러)

순위	국 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무역총액		점유율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1	중 국	467,718	581,521	1,231,886	1,392,453	1,699,604	1,973,974	56.7%	67.1%
2	태 국	147,329	36,199	226,920	192,469	374,249	228,668	12.5%	7.8%
3	러시아	20,076	33,539	190,563	126,068	210,639	159,607	7.0%	5.4%
4	인 도	71,915	90,620	44,587	35,768	116,502	126,388	3.9%	4.3%
5	브라질	-	33,996	-	33,504	-	67,500	-	2.3%
6	싱가포르	6,564	1,025	60,048	54,649	66,612	55,674	2.2%	1.9%
7	독 일	17,000	14,470	59,294	36,795	76,294	51,265	2.5%	1.7%
8	네덜란드	10,318	12,100	21,853	15,764	32,171	27,8864	1.1%	0.9%
9	대 만	2,776	3,268	21,602	21,669	24,378	24,937	0.8%	0.8%
10	알제리	-	19,516	-	0	-	19,516	-	0.7%
10대 교역국 합계		743,696	826,254	1,856,753	1,909,139	2,600,449	2,735,393	86.8%	93.0%
기 타		203,099	92,517	192,255	113,167	395,354	205,684	13.2%	7.0%
전체 교역규모		946,795	918,771	2,049,008	2,022,306	2,995,803	2,941,077	100.0%	100.0%

자료: KOTRA

#### □ 북한의 주요 국가별 무역동향

- 핵실험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와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 대한 무역 편중이 심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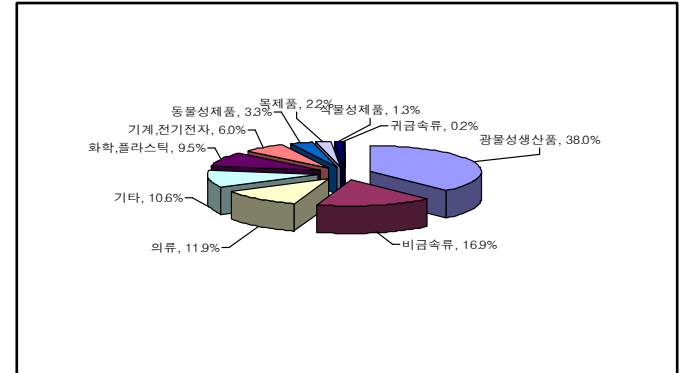
-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어, 지난 2004년도의 대중국 의존도가 48.5%였지만 2007년에는 67.1%를 기록하였음.
-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07년에는 추가적 경제제재로 인해 92.3%나 감소하였음.
- 중국을 제외한 주요 무역대상국들로는 태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독일 등이며, 전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무역비중이 높고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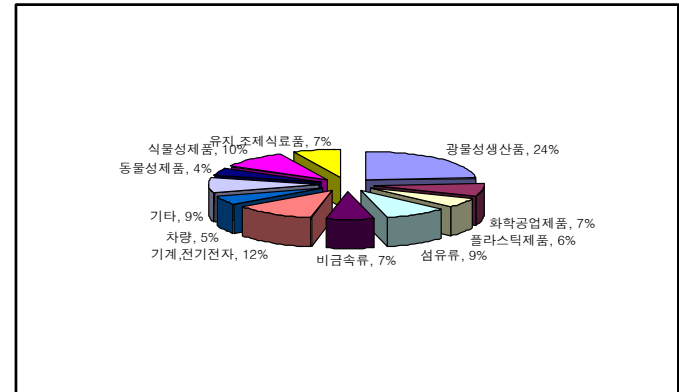
- 수출동향
  - o 2007년도에는 광물성 생산품과 비금속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음.
  - o 광물성 생산품과 비금속류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각각 43.0%, 13.4%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수출에서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4.9%를 차지함(<그림 2-2> 참조).
  - o 반면, 수산물, 어패류 등의 동물성 생산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55.9% 감소하였는데,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o 기계·전기전자제품의 수출도 3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음.
- 수입동향
  - o 식량수입의 증가로 인해 식물성제품의 수입이 전년대비 2.6배 규모인 1억 9,589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o 북한은 2007년에 모두 37.9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였는데, 이중 대중국 수입이 13.6만 톤, 대태국 수입이 21.2만 톤을 각각 기록하였음.
  - o 반면, 지난 3년간 계속 수입증가를 주도하였던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은 7.7% 감소한 4억 9,135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던 광물성 연료 및 광물류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북한의 수

입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2-2> 북한의 품목별 수출비중



<그림 2-3> 북한의 품목별 수입 비중



## 나. 투자유치

-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음.
-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액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중국 및 화교자본인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집중되었음.<sup>2)</sup>
- 1991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투자유치 총액은 약 8억 8천만 달러(추정치)에 불과하며,<sup>3)</sup> 이 역시 대부분 조총련계 기업, 한국기업, 중국 및 화교계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서방국가 기업들의 투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음.

<표 2-2> 북한·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북한	중국	베트남
1991~96 <sup>1)</sup>	24 <sup>2)</sup>	25,476	1,217
1997	307 <sup>2)</sup>	44,237	2,587
1998	31 <sup>2)</sup>	43,751	1,700
1999	-15 <sup>2)</sup>	40,319	1,484
2000	5 <sup>2)</sup>	40,772	1,289
2001	-24 <sup>2)</sup>	46,846	1,300
2002	12 <sup>2)</sup>	52,700	1,200
2003	158 <sup>2)</sup>	53,505	1,450
2004	197 <sup>2)</sup>	60,360	1,610
2005	50 <sup>2)</sup>	72,406	2,021
2006	135 <sup>2)</sup>	69,468	2,315

주: 1) Annual average

2) 이는 추정치임.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외개방을 추진한 중국은 물론 북한보다 늦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베트남과

2)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누계는 2006년 상반기까지 44개 사업으로 투자합의액은 2억 1,935만 달러이며, 실제투자액은 1억 2,72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으로 대북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가 거의 중단되었음.

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을 참조.

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임.

-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체제개혁을 동반한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이에 반해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관계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며, 체제개혁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도 외자유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까지 외자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투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다음 세 가지 현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해외교포 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임.
  - 일본의 대북투자는 조조경제교류라고 불릴 만큼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부임.
  - 1990년대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중국의 대북투자도 중국 연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기업의 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기업들도 한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대북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투자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시장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개념 하에서 해외교포 기업들의 투자는 명목상 북한의 자본이라는 자기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임.

- 둘째, 최근 중국 및 화교자본의 대북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화교자본의 특징은 제조업보다는 주로 부동산 및 금융 분야의 투자가 우선임.
  - 이들 자본은 북한시장에도 예외 없이 부동산 및 금융 분야부터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7월 홍콩반환 이후 화교자본이 북한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1999년 이후 중국 및 화교자본의 대북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및 광물자원 등을 대상으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동북3성 개발에 따른 원부자재의 확보의 필요성과 국제시장에서의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셋째, 최근 미국 및 일본기업들도 대북투자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임.

- 양국기업들은 서방국가의 기업 속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음. 미국기업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와, 일본기업은 북·일 수교 및 대일 청구권의 지급시기와 각각 연계되어 있음.

- 특히, 북핵신고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등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과 일본 등 서방권 기업들의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임.

□ 결국 향후 외국기업들의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해제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문제의 해결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임.

-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북투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경제활동 참여라기보다는 농업협력 등과 같은 원조 및 개발지원형 진출 내지는 일부 지역의 관광·서비스업 진출, 인프라 건설 참여 등의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이는 북한의 단기적인 외화수입 증대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 가. 무역체제주의와 실리증시

□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됨으로써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맺었던 쌍무적 경제관계가 거의 단절되었으며, 이는 북한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음.

-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이 북한전체 대외무역의 72%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였음.

-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체제전환을 계기로 북한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교역형태 및 결제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였음.

- 1991년부터 동구권 국가들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청산결제방식을 폐지하고 경화결제방식으로 이행하였으며, 구소련도 1991년 1월부터 부분적 경화결제를 시작하다가 1992년부터는 전면적인 경화결제로 넘어갔음.

- 중국 역시 북중무역을 1992년부터 종래의 구상무역에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4) 변경무역 경우만 물물교환에 의한 교역형태를 인정하고 있음.5)

- 경화결제능력이 없고 구상무역 중심의 무역관행으로 일관되던 북한의 교역패턴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외경제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6)

4) 중국의 경우는 1995년 이후 식량 및 에너지 등과 같은 전략물자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사회주의 우호가격을 부활하였음. 이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분석됨.

5) 1990년 11월에 북한과 옛소련간에 “조·소 무역 결산체제 변경에 관한 협정”과 1992년 1월에 중국과 북한간에 “조·중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북한과 이들 국가들과의 결제방식은 청산결제에서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이때부터 북한은 대외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재화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생산된 재화 역시 이들 시장으로의 수출이 쉽지 않게 됨에 따라 대외무역 전반이 붕괴되기 시작하였음.

6) 이는 최근 북측에서 발간된 선군경제 해설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 자료에서는 “1990년대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주되는 대상으로 되고 있었던 세계 사회주의시장이 무너지고 오직 자본주의 시장만이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에로 나아간다는 나라들도 대외경제관계에서 자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있음(『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46).

□ 이러한 대외경제 전반의 위기감 속에서 북한은 실리중시의 정책전환 및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외자 유치정책과 '무역제일주의'의 표방임.

- 1990년대 초반에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대외경제 관계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음.

- 더욱이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추진했던 합영사업의 성과도 미미하여 북한으로서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음.

- 북한이 무역활성화 및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새로이 취한 정책이 1992년에 라진·선봉지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그 이듬해인 1993년 12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무역제일주의를 주장한 것임.

- 북한은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1992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50여개 이상의 외자유치 관련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음.

- 또한 "무역제일주의" 슬로건과 함께 1990년대 중반에는 UNDP의 도움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음.

□ 둘째, 과거 사회주의권 시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붕괴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정책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sup>7)</sup>

7) 이는 김일성이 "우리가 지난 시기에는 사회주의시장을 기본으로 하여 무역을 발전시켜왔는데 이제는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거기에 자본주의가 복귀되었으며 동구라와 사회주의나라들도 붕괴되어 자본주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시장을 기본대상으로 하던 무역정책을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특히 무역정책을 다시 정비하면서 인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제3세계국가들과의 무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북한이 이들 국가를 택하게 된 이유는 김일성이 붕괴된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동남아시아의 제3세계의 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여 이들 국가와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임.<sup>8)</sup>

- 북한은 이들 국가 외에도 남한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가공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이처럼 북한이 그 동안 사회주의 국가들에만 국한해왔던 대외경제관계를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제3세계권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여년 동안 변화된 국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음.

□ 셋째, 대외경제관계에서 정치적 비중을 줄이면서 시장경제 원리 및 효율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임.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은 대상국들이 상호 필요에 의해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따라서 이시기의 대외무역은 경제원리보다 정치·외교적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무역형태에서 탈피하여, 시장위주의 대외무역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음(김일성, "대외경제발전관계," 『김일성저작집』 제44권을 참조).

8) 김일성은 이러한 남남협력의 중요성과 이 지역 블록수축간의 단결과 협조를 위한 국제회의를 강조한바 있음(김일성, "대외무역과 외화부족문제," 『김일성저작집』, 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특히 북한이 1998년에 자본주의식 거래방법을 반영한 「무역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sup>9)</sup>
- 북한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뿐만 아니라, 체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구상무역방식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적인 신용거래에 적용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물자교류 및 외화벌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중요시한 것으로 기존의 정경연계에 따른 대외무역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북한은 무역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모색하였음.

- 이를 위해 경제 각 부문별 그리고 각 단위별로 외국과 무역거래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 무역방식에 있어서 직접무역과 증개무역 외에 가공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달러벌이에 매진하는 정책을 취하였음.<sup>10)</sup>
- 되거리 무역(재수출 무역)이나,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수출품 생산기지의 조성 등의 정책도 강화하였음.<sup>11)</sup>

□ 다섯째, 북한은 무역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무역에서 탈피하고자 1990년대 초반부터 기구개편을 통한 무역 분권화를 시도하였음.

- 무역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만한 변화는 1998년에 있었던 무역기구의 개편임. 북한은 당시 정부원(현 내각)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를 ‘무

9) 무역법은 총 5장 58조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외무역체제와 질서 그리고 무역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0) 북한은 이미 1997년 10월에는 남포와 원산을 보세가공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가공무역법」을 개정·공포하였음.

11) 한수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 절실한 급일의 요구」 『근로자』, 1991. 4.

역성’으로 개칭하였음.<sup>12)</sup>

-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업무를 가진 기구를 통폐합했으며, 무역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성 산하에 무역경제연구소를 조직하였음.<sup>13)</sup>
- 무역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무역성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였고, 상품의 수출 라인이 없는 회사를 통폐합하였으며, 경영구조의 단일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무역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 이는 무역기구를 하나의 계통으로 정리함으로써 무역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고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 나. 7·1 조치 이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 7·1 조치 이후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수익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으로써, 개별 공장 및 기업소는 외화획득 차원에서 무역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북한 당국 역시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제도약과 외자유치를 통한 생산활동 경제발전전략의 선택이 불가피하였음.
- 즉,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있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무역사업의 발전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음.<sup>14)</sup>

12) 무역성 산하에 경제협조관리국, 대외건설관리국, 지방무역지도국, 법규국, 계획국, 무역대표부 등의 기구가 조직되었음(권경복, “북한의 무역조직 개편과 시사점,” 『통일경제』, 1999. 7, p. 79).

13) 김일성은 1990년대 초반에 “우리는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본주의나라들과 능란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무역일군이 많아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전문 무역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바 있음(김일성, 「대외경제관계발전」 『김일성작집』 44권).

14)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pp. 246-285 참조.



## □ 무역사업의 발전

- 무역의 확대·발전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및 정보화에 중요한 담보이며,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세계시장의 무한경쟁 등에 대비하여 무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인식, 새로운 무역 방식 등을 강조하고 있음.<sup>15)</sup>
- 무역사업 발전을 위해 첫째, 무역대상국의 다양화임.
  - o 무역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외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외시장을 일부 국가에 의존할 경우 그 나라들의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o 대외시장 확대를 위해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국가는 풍부한 천연자원, 다양한 공업제품 생산, 지리적 인접성 등의 이점을 갖고 있음.
  - o 유럽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확대로, 이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무역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확대해서 외화 획득을 증대시키는 것임.
  - o 이를 위해서는 세계경제 변화, 국제무역 관행, 각국의 무역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정보 확보 및 연구가 필요함.
  - o 직접무역 외에도 가공무역,<sup>16)</sup> 되거리무역, 보세가공무역, 변경무역, 기술무역 등을 적극 활용해서 무역을 확대해야 함.
- 셋째, 수출상품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것임.
  - o 대외시장 수요에 맞게 수출품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시장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가 중요함.
  - o 수출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시장의 사용조건에 맞는 제품 생산 △계약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 △수출품에 대한 감독 통제, 사업 강화 △국제품질인증제도 수용 △대외시장 수요에 맞게 수출품의 포장 개선 등이 필요함.

15) 위의 책, pp. 247-248.

16) 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들여 온 원료와 자재, 부분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사용가치를 일정하게 상실한 설비를 수리, 재생산하여 주는 무역방법임. 가공무역에는 삼가공무역(원가공무역), 가공수출무역, 수리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이 있음.

- 넷째, 수출상품구조의 개선임.
  - o 북한의 경제현실 및 장점에 기초한 수출상품 및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가공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 o 북한은 △기술집약적 제품 △전기와 원료를 적게 쓰는 제품 △마그네사이트 및 흑연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 등을 제시함.
- 다섯째,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의 수입임.
  - o 현재의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여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들과 기계설비 및 일부 소비품을 수입하는 주력해야 한다는 것임.
  - o 특히,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자재, 연료 등을 수입해야 함.
- 여섯째, 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함.
  - o 수출입계약을 정확히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 o 계약조건대로 수출품의 질을 보장하고 계약일정에 맞게 제품을 전달해야 함.
  - o 수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지불의무를 이행치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일곱째,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바로하면서 공장 및 기업소의 창발성을 강화해야 함.
  - o 무역사업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는 무역성의 책임과 역할임.
  - o 모든 무역회사들과 무역일군들은 무역성의 통일적 지도에 따르고 행정규율을 강하게 세워야 함.
  - o 대외무역에서 하부단위의 창발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물의 일부를 수출하여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사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
  - o 또한 지방 정권기관들도 자기 지방의 생산물이나 자연산물을 일정하게 수출하여 번 외화를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 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선군경제에 대한 경제해설 자료에서도 “인민경제 고정재산들의 갱신주기가 지났으나 갱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료 및 자재가 부족하여 생산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해외의 발전된 기계설비나 원료 및 자재를 대도록 합영·합작을 잘하면 인민경제의 기술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생산정상화 문제도 일정하게 풀 수 있다... 외화를 벌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고 대외경제협력 및 외자유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sup>17)</sup>
- 즉, 북한 당국이 제시한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기술개건 및 현대화 △생산정상화 △외화 획득 △인민생활 제고 등임.
-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리위주의 대외정책’ 추진하였기 때문임.
- 과거에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대외정책도 실리와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북한 당국은 관련 법제 정비 및 경제특구 확대 조치, 경제대표단 파견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04.11), ‘외국인기업법’(05.5)을 개정하였음.
  - 또한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04.1)하고, 대북투자 관련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내 외국 법률컨설팅 회사 설립도 허용하였음.
  -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80~120달러에서 38달러로 인하(04.9)하고, 전기·물·항구사용료 등 운영비용을 30% 인하하였음.

17) 위의 책, p. 265.

- 2002년에 신의주특별행정구역(9월), 금강산관광지구(10월), 개성공업지구(11월) 등 경제특구로 지정, 발표하였음.
-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대표단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EU 지역 국가들에 보내 경제협력에 합의하였음.
-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전시회 및 투자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합영, 합작사업 추진의 원칙
  - 합영, 합작사업의 대상은 인민경제의 기술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공장, 기업소를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거나 △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장, 기업소를 건설해야 함.
  - 경제적 타산에 기초하여 합영, 합작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쌍방의 투자총액 △판매수입액 △생산제품의 원가 △누적 자금 수입액 △부족이 공급하는 전기 및 용수의 가격 △임금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합영, 합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함.
  - 합영, 합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영, 합작기업들의 올바른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정을 존중 △부족의 일방적 행정지시에 의한 해당 기업운영 금지 △생산공정을 신기술로 계속 갱신 △판매시장 확대 △연간 결산과 이윤배분사업의 정확한 시행 등이 필요함.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김정일체제가 공고화된 이후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제기하고, 추진해 왔음.
- 대외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교류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음.
- 이를 위해 첫째, 선진과학기술의 적극 수용임.
  - 외국으로부터 선진과학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비주체적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

- 과학기술교류를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그 양성사업에 서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또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과학자 및 기술자의 유학·과연, 해외 저명학자의 초빙, 선진기술국가 및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사업 조직, 과학기술 관련 문헌 적극 수입 및 보급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함.

- 둘째,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의 매매를 활성화해야 함.
  - 지적소유권에는 공업소유권, 노하우, 저작권 등이 있는데, 특히 공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등으로 구분됨.
  - 지적소유권은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거 매매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업소유권을 가장 실리를 얻게 거해하는 것이 필요함.
  - 공업소유권 거래에서 기본은 특허기술로, 필요시 국제기술시장에서 이를 수입해야지만 가능한 우리의 특허기술을 많이 팔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화폐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대외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이를 위해 첫째, 세계 주요 은행들과의 거래 확대임.
  - 자본주의국가들의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자은행, 단독은행, 은행대표부 등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신용업무와 함께 환율시세 사업 강화해야 함.
  -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하여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등 신용업무 강화가 필요함.
  - 환율시세 변동에 잘 대응하여 외화손실을 막고 변동에 따른 수입을 확대해야 함.
- 셋째, 대외보험사업의 강화임.
  - 대외보험거래의 확대를 통한 화폐수입 증대를 위해 신규 보험업종의

- 개발, 기존 계약건수 증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또한 재보험사업도 활성화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함.
- 자연재해나 사고예방을 통해 보험료 지출을 줄여야 함.

### 3. 북한의 대외경제 관리체제

#### 가. 대외무역 관리체제

##### 1) 법제 및 기구 정비

##### ① 내각, 당·군부의 무역관리

□ 북한의 대외경제 담당기구에는 대체로 4개의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내각 산하 대외경제 기구로서의 무역성 기구, 제2경제위원회 산하 대외경제 담당기구,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외경제 담당기구와 그 외에 군부를 비롯한 특수 대외경제 담당기구들로 구분됨.

- 이렇게 구분되는 원인은 국가의 경제관리 체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할 관리되기 때문임.

□ 내각의 대외무역조직은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 발표 이전과 이후, 그리고 1998년 헌법 개정 이후에 각각 변동이 있었음.

- 1992년 이전의 무역조직은 정무원 산하에 대외경제위원회,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가 무역관련 업무를 분할하였음.

- 그러나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가 발표된 이후에는 대외경제위원회가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통합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업무를 총괄하였음.
 

- 대외경제위원회가 국가계획위원회의 무역계획국에서 결정된 무역계획에 의거하여 수출입업무를 총괄하고 산하에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두었음.

-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경제사업부를 폐지하고, 대외경제위원회와 무역부는 무역성을 재편되었음.
- o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권한강화와 맞물려 이후 무역성의 대외무역과 관련된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음.<sup>18)</sup>

□ 북한은 무역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 이외에도 지역별 담당체계의 확립, 실용적인 테크노라트의 진진 배치 등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외개방과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체계로의 정비를 단행하였음.

- 또한 각 도(직할시)는 물론 시, 군도 무역회사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이들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해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지도(직할시) 무역관리관의 지도를 받음.

- 북한은 무역 및 대외경제기구의 유사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무역정책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조직을 개편하였음.

□ 무역성은 무역, 세관업무,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합병·합작사업, 일부 대남 교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산하에 경제협조관리국, 대외건설관리국, 지방무역지도국, 법규국, 계획국, 무역대표부 등의 공식 기구와 함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의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들도 갖고 있음.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대남 경험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산하에 ▲광명성총회사(피복, 경공업, 농수산물 부문) ▲삼천리총회사(전자, 중공업, 화학공업 부문) ▲개선무역회사(약재를 비롯한 농업부문) ▲금강산관광총회사(금강산관광개발사업 관리) 등이 있음.

-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 경제특구로 지정된 라진·선봉지대 개발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18) 대외경제위원회의 13개 회사는 무역성 소속으로 이관시키고,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사를 '대외건설관리국'으로 합병하고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은 '경제협조관리국'으로 통합하였음.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하에 많은 무역회사를 두고 있는 무역전담 기구로서, 당초 대일무역 관련 업무를 주로 했지만 최근에서 무역전반은 물론 외자유치에도 나서고 있음.

## ② 북한의 무역성 기구체계

□ 무역성 행정기구 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국: 교시 편찬국 또는 문헌국임.

- 2국: 지역국으로 중국, 몽골, 동남아 국가들, 일본, 미주 국가들을 담당하고 있음.

- 3국: 지역국으로 구라파, 중동 및 아프리카 나라들을 담당하고 있음.

- 5국: 유엔기구 담당 부서임.

- 6국: '국제전람사' 담당 지도국으로 평양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를 조직, 선전하는 기능을 담당함.

- 7국: 총성의 외화벌이 담당국임. 이 때 외화벌이는 국가계획외의 자체예비로 진행되는 외화수입임.

- 군수지도국: 국방관련 수입물자 보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이며, 인민무력부와의 긴밀한 연계속에 사업진행

- 수출국: 내각 산하 각 무역회사들의 수출을 도와주는 부서임.

- 수입국: 내각 산하 무역회사들의 수입허가를 해 주며, 전반적인 수입정형을 장악하는 부서임. 이 부서에는 8호지도원과 9호지도원 편제가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의 '만수무강'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보장사업을 진행함.

- 행정조직국: 무역성 내부 행정사업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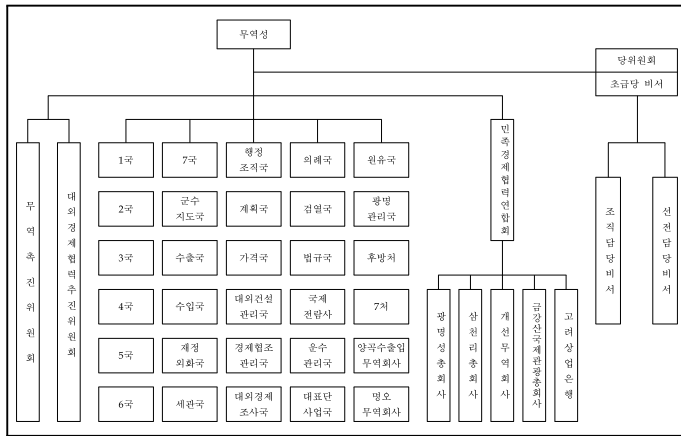
- 계획국: 무역 수출 및 수입계획 작성과 시달사업
- 의례국: 대외활동시 의례사업담당.
- 검열국: 내각 산하 무역회사들의 무역사업 전반을 검열하는 기구임.
- 법규국: 무역법, 합영·합작법연구와 각 회사들의 무역거래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며 외국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결을 지휘하는 부서임.
- 재정외화국: 무역성 내부의 재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후방처: 운수과 청사관리과 그리고 경리과를 갖고 있으면서 복지 및 행정 지원 사업을 담당함.
- 세관국: 세관검열 및 관세부과와 징수 사업을 진행함.
- 가격국: 수출·수입 물자들의 가격 규정 및 시달
  - o 내각 산하 무역회사들과 일부 특수기관 무역회사들도 가격국에서 승인된 가격으로만 거래하게 되어 있음.
- 대외경제조사국(대외경제연구소): 국제무역 현황 자료조사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7처: 무역성 내부의 통신담당 부서임.
- 대표단 사업국: 내각 산하 무역관련 기관들에서 대표단을 외국에 파견할 경우 그 적법성을 검토하고 합의 해주는 기구임.
- 원유국: 원유 수입담당 기구임. 대외적으로는 원유 수출입 회사로 활동하고 있음.
- 국제전람사: 외국에 나가는 전람회와 국내에서 하는 전람회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임.

- 운수관리국: 무역화물에 대한 통관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임. 산하에 여러 개의 지사들을 가지고 있음.
- 광명관리국(광명무역회사): 각도 무역회사들의 대외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각도 무역회사들의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음.
- 양곡수출입 무역회사: 양곡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고 있음.
- 명오무역회사: 호위국(김정일 생활물자) 물자 수입을 담당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외국자본과 기술유치사업과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개발사업 담당하고 있음.
- 대외건설관리국: 대외건설과 남남 합작사업 담당하고 있음.
- 경제협조관리국: 경제합작과 합영사업을 지도하는 부서임.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 기구는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전문 부서를 설립하고 거래내용을 절대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음.
  - o 이 기구의 위원장은 무역성 부장보다 반등급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바, 이것은 이 기구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줌.
- 한편, 노동당 산하의 무역조직은 비서국 산하기관(통일전선부, 계획재정부, 군수공업부, 간부부, 국제부 등)들은 각자 자신들의 무역상사를 설립하여 대외무역을 수행하고 있음.
- '39호실'에서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짐.
- 인민무력부의 경우도 산하에 무역상사를 소유하고 독자적인 대외무역을

수행하고 있음.

- 총참모부 예하의 군단급에서도 '34부'관할하의 무역상사를 두고 있음.
- '44부'가 1995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이곳은 인민무력부 전체의 외화벌이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지도와 총화를 담당하는 최고 실무기관임. 또한 44부에는 인민무력부내 각국 산하 무역상사들을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군단·병중·사령부에 있는 34부를 통해 이 단위들에 있는 무역회사들의 사업까지도 모두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음.

<그림 2-4> 북한 무역성 기구체계



### ③ 무역회사

#### □ 무역회사의 주요 업무

- 북한의 무역회사는 전문무역회사와 종합상사(총회사)로 구분됨.
- 무역회사는 국가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외국과의 수출입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영기업소로서 국가무역정책의 실질

적인 집행자임.

- 주요 업무는 수출입계획 초안 작성, 수출입계획의 수행, 외국무역기관과의 개별계약 체결, 수출품생산기업소나 수입품 수요기업소와의 공급계약 체결, 상품인도 및 인수에 따른 대금결제, 수출에서의 수익성 제고와 유통비 절감, 상품시장동태 조사 연구, 거래대상 무역기관의 신용상태 조사 등임.

#### □ 무역회사의 의무와 책임

- 첫째, 독립채산제 적용에 따라 합리적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남겨야 함.
- 둘째, 창출된 이익의 일부는 국가기업 이익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함.
- 셋째, 다른 나라 무역회사들과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책임을 짐.
- 넷째,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절차는 무역법에 따라 이루어짐.

#### □ 무역회사의 관리, 감독권

- 중앙무역지도기관(무역성)이 무역회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수출입허가를 통해 대외무역을 총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당과 군부는 독자적으로 무역회사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무역성의 감독·통제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당과 군부의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 북한체제의 특성상 내각의 무역성보다 당과 군부의 권력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성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④ 주요 무역관련 법률

## < 무역법 >

- 북한의 무역법은 199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된 이후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수정, 보충되었음.
  - 무역법은 모두 5장 5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무역법의 기본 ▲제2장은 무역회사 ▲제3장은 무역계획 ▲제4장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제5장은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을 각각 다루고 있음.
- 북한의 무역법 채택 및 수정 보완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추진되어온 대외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와 국제시장에서 통용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되는 규범과 방식에 의거해서 대외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동법에서는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무역의 원칙
  - 무역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지방무역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함.
  - 그 외에 중요한 원칙으로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원칙, ▲신용준수 원칙, ▲무역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원칙 ▲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원칙 ▲최혜국대우 및 자국민대우원칙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제한,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해 상응조치 원칙 ▲무역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원칙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특수경제지대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무역법에 의하면 무역거래의 당사자는 무역회사로서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만이 무역활동을 할 수 있음.
  - 무역회사는 영업허가와 함께 무역거래 범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

며,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 수 없음.

- 무역계획에 의한 무역활동
  -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 항목으로, 국가계획기관이 수립해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무역회사 등에 시달함.
  - 국가계획기관은 수출입총액과 같은 종합적인 계획과 중요 물자의 지표만 계획화하고(중요물자 지표는 내각 비준),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출입지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무역회사가 정함.
  -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무역사업의 지도 강화
  -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하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함.
  - 무역사업에 올바른 지도를 위해 중앙무역기관에 비상설로 국가무역지도위원회를 구성함.
- 지방무역의 활성화
  -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방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지 조성과 판로개척 등의 문제들을 제 때에 해결해주어야 함.
  - 시, 군에서는 무역회사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관을 통해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 군의 무역회사는 도(직할시) 무역관리기관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자체의 돈자리를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함.
  - 시, 군에서 자체로 생산한 제품은 도 무역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출함.

## < 가공무역법 >

- 가공무역법은 200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는데, 위탁가공무역 활성화를 통한 무역 확대와 실리주의를 중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음.
- 가공무역법은 지난 1996년 2월 정무원 (현 내각) 결정으로 채택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 규정 (이하 96년도 규정)이 일반법으로 확대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법은 모두 5장 42조로 ▲ 1장은 가공무역법의 기본 (제1~7조) ▲2장은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제8~13조) ▲3장은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4~22조) ▲4장은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제23~35조) ▲제5장은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4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공무역법의 주요 내용을 96년도 규정과 비교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의 취지를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쟁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가공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96년도 규정에서 볼 수 없었던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제5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크게 4가지 의미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한 것은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가공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계획경제의 일부로 편입시킴으로써 계획화체계를 복원·강화해나가려는 의도임.
- 셋째, 법적·제도적 보장없이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가공무역을 현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넷째, 일부 무역회사나 공장·기업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관 본위주의나

부정·비리 등을 제거·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새로운 가공무역법은 허용지역 및 대상기관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확대 하였는데, 96년도 규정에서는 가공무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있는 공장·기업소로 제한하였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가공무역은 여러 지역에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전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이 가능하게 되었음.
- 단 보세가공무역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나는 북한이 경제특구나 보세가공구를 남포·신의주·개성 등의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위탁가공무역에 보다 비중을 두고 보세가공무역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임.
- 한편 가공무역의 대상기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의 무역회사가 담당해왔던 것을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 및 공장, 기업소로 확대하였다는 점임.
- 이는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생산수단의 소유권한을 갖는 기관을 국가와 협동단체 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취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또한 상급기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공장·기업소가 직접 가공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임.
- 이로 인해 외국기업은 무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생산공정 및 관리 등에 있어 현지 생산자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가공무역법이 대상선정을 구체화하고 경영활동에 있어 실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함.



- 96년도 규정의 경우 단순히 가공무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건재공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대상선정의 기준을 ▲경제기술 잠재력과 신용 있는 대상 ▲가공능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상 ▲과학기술발전과 해당 단위의 설비갱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대상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음.

- 이는 북한경제에 실제 도움을 주고 이익을 크게 내는 분야에 가공무역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가공무역법에서는 “가공무역으로 국가에 큰 이익을 준 무역회사와 공장·기업소에는 상금을 주는 것과 같은 우대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즉, 노동보수에서의 차별화와 초과이익분에 대한 분배 등과 같은 물질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실리주의적 경제운용 방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계약 위반시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도 96년도 규정에 비해 새로운 법안에서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음.

- 가공무역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연시켰거나 거절한 경우 ▲포장, 품질, 수량 같은 것이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가공비 또는 상품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그 밖의 계약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의 지불 및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음.

- 또한 외국기업이 가공조립품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식도 강화하였는데, 외국기업이 가공조립품을 제때 수령하지 않을 경우 북한측이 위약금과 보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을 판매처분할 수 있는 시점도 96년도 규정에서는 6개월 후였으나 3개월 후로 단축되었음.

□ 그 외에도 새로운 가공무역법에서는 ▲심의 및 통보기간 ▲가공제품의 국내 판매 허용 ▲품질 검사원의 체류 인정 ▲분쟁해결 등에 있어서도 96년도 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 우선, 심의 및 통보 기간이 96년도 규정에 비해 단축되었는데, 가공무역심의기간은 20일에서 15일로, 세관등록은 가공무역허가증을 받을 날로부터 20일 내에서 5일 내로 각각 단축되었음.

- 둘째, 가공제품을 북한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데, 국가적 조치로 가공용 물자를 다른데 돌려쓰거나 국내에 판매하려 할 경우 계약상대측과 사전협의의 한 다음 해당 세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셋째, 품질검사원의 체류 가능성을 법제화하였음.

- 넷째, 96년도규정에서는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북한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으로 한정하였음.

□ 북한은 1980년대의 합영사업과 1990년대의 나진선봉지대로의 투자유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위탁가공무역은 북한의 중요한 대외경제협력 방식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즉, 단기간 내에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힘든 상황에서 위탁가공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외경제관계 또는 남북경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임.

- 결국 가공무역법의 제정은 이제까지 북한 내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위탁가공이 법제화를 통해 공식화했다는 점과 무역 활성화 및 대외경제관계 확대에 있어 위탁가공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나. 외국인투자 관리체계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은 이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법을 모법으로 두고 그 하위 체계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이 있음.

- 외국인투자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음.

- 합영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 설립운영, 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임.

- 따라서 합영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대외경제중재법은 1999년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제 정비를 이룬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북한에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한 중법은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이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법은 북한의 외국투자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일반적 성격을 가지며, 총22조의 조문으로 되어있고 2004년 11월 30일 수정보충이 되었음.

- 동법 제1조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임.

-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창설 가능지역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정해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또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개정(2005.4.19)은 외국인 투자신청에 대해 합작·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에 기업창설에 대한 승인을 하여 통보해 주었던 것에 비해 개정 법률에서는 합작·합영기업 모두 15일 안에 기업창설 승인을 통보해주도록 개정하였음.

- 이는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합영법

- 합영법의 제정 경위는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한 체제이념과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1979년 8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자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제정하였음.

- 당초 북한은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나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외국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합영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자 1994년 1월에 개정을 하였음.

- 그 후에도 2004년 11월 30일에 수정보충 되어 총5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음.

- 동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는 것”임.

- 또한 합영법 개정에 따르면 합영기업의 등록자본 비율을 총투자액의 30-7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합작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세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음.

□ 합작법

- 합작법의 적용대상 기업은 합작기업이며, 합작기업은 북한 측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되 경영은 북한 측이 담당하며 외국인투자 지분의 상환과 이윤분배는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계약조건에 따르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 2004년 11월 30일에 수정보충 되어 총 21조로 되어있음.
- 동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는 것임.
- 특히 합작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합작기업은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있고 또한 합작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했던 내용을 새로운 개정 법률에서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개정하였음.
- 그러나 생산제품을 공화국(북한)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 외국인기업법

- 총 4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1월 30일에 수정보충 되었음.
- 동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임.
- 또한 외국인 기업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업회계 규정을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 계산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재정관리와 회계를 공화국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 계산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함.

<표 2-3> 외국인 투자기업 비교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라선-신봉 경제무역지대
투자방식	공동	공동	단독(외국투자가)
출자비율	당사자간 협의	출자지분 개념 없음	외국인 100%
감 자	허용안됨	규정없음	허용안됨
설계승인 처리기간	1개월 내 (지대내는 50일 이내)	50일 내	80일 내
경영방식	공동	단독(북한측)	단독(외국인투자가)
경영조직	이사회	규정없음 (다만, 상설공동회의 기구 설치)	규정없음
분배	이익	공동(투자비율)	단독(외국인투자가)
	손실	공동(투자비율)	단독(경영자)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원칙: 국내거래는 합영자재 생산 - 기타: 무역기관, 여타 합영·합작회사를 통한	규정없음 (외국기자체 수입시 국가승인 필요)	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한
보 험	북한보험기관	규정없음	북한보험기관
기업소득세	- 25%(지대: 14%) - 이윤발생후 3년 면제, 연장 가능	법규정에 의함 (합영기업과 같음 것으로 추정)	- 14% - 이윤발생후 3년 면제, 2년연장 가능(50%면제)
관 세	수출입관세 면제	규정없음	수출입관세 면제
기타 조세	-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이용세 등	-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이용세 등	-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이용세 등
분쟁해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회계, 세무감독	재정검열원의 검열	해당 재정기관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

자료: 서갑성, “북한의대의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동북아논총』, 44집(2007), p. 144.

다. 외환 관리체계

- 북한 외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993년 1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외환관리법을 채택한 이후 1999년 2월, 2002년 2월, 2004년 11월 동법을 수정 보완하였음.

- 북한의 외화관리법은 모두 4장 42조로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외화관리법의 기본, ▲외화수입과 이용, ▲외화반입과 반출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등임.

- 한편, 외화관리법시행규정은 제4장 제85조(주제93 2004.12.6 수정)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은 국제간 무역거래와 금융자본의 거래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정부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 외화관리법은 외화의 수입과 이용, 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였음.

- 북한은 외부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는데, 북한 외화관리법에서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들여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외화거래는 북한 당국의 중앙집권적 관리 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외화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밑에 국가외화관리 기관이 하며, 국가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외화수입과 지출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7.1조치 이전까지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자는 수출에 의한 외화수입을 기업내부에 재투자하거나 자체유보 할 수도 없고 이를 자체 계획에 의해 수입으로 다시 전환할 수도 없었으며 모두 국가에 납부해야 했음.

- ‘그러나 북한은 7.1 조치에서 중요산업 위주로 일부 기업소들에게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자체 사용이나 수입권한을 확대해주는 조치도 내렸음.

-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수입계획을 제때에 실행하며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공민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안에서만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서 “외화는 대외경제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와 러비(여비), 경비, 유지비의 지불거래와 같은 비무역거래, 은행에서 조선원(북한돈)을 사거나 파는 거래로 이용하며, 또한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같은 거래 등에 외화를 거래하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대외거래는 실질적 재화의 수출입액은 크지 않으며, 무역 밖의 거래 또한 많지 않음.

□ 북한에서도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대외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및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의 외화관리법시행규정(제20조)은 “합작, 합영, 외국인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외국투자기업은 무역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외화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 공화국령역 안의 다른 대외결제는행이나 공화국령역 밖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외화 돈자리(외화계좌) 관리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하며, 또한 기관, 기업소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국가외화의무납부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국가외화 돈자리(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역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으로써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외화원돈자리를 두어야 함.

- 이러한 돈자리(계좌)를 통하여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이 공화국령역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개인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현금지불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 외화 현금을 북한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음.
-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많은 외화유출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외국투자가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이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회계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공화국령역 밖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자본을 제한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용 원료, 자재 및 설비 같은 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과 경영용 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에 조직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은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의 외화는 무역거래, 비무역거래, 자본거래, 금융거래 등의 거래에 이용되며, 무역거래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련되는 경제거래가 포함됨.
- 비무역거래는 대표부 유지비, 대표단 여비, 이자, 이익배당금과 같은 지불거래, 관광, 체신, 항만,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가 포함됨.
- 자본거래는 직접투자, 민간투자, 정부투자, 신탁,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과 취득, 부동산 취득 같은 거래에 활용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은 이러한 무역거래, 비무역거래, 자본거래, 금융거래 등의 외화거래가 막히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외환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 외화수입을 늘리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관점을 두면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음.

- 현재 북한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북한은 환율을 타국과의 협정이나 외환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주적 입장에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환자업무(외국환매업무)를 하는 은행은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만 외화업무를 할 수 있으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시세의 종류와 적용범위, 고정환자시세(고정환율제도)는 국가외화 관리기관이 정함.
- 북한의 대외결제은행은 고정환율을 기초로 하여 북한 원화에 대한 외화현금환자시세(현찰매매율)와 결제환자시세(전신환매매율)같은 시장환율을 정함.
- 북한의 환율은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이 있고, 공식환율은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비공식환율을 비공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 공식환율 중 고정환율은 북한원화에 대한 외국통화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시장환율은 고정환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현금환자시세(현찰매매율)와 결제환자시세(전신환매매율) 등으로 조선무역은행이 고시함.
- 비공식 환율은 개별 거래자의 외화매매에 의해 결정되는데 성격상 외화현금환자시세(현찰매매율)만 있으며, 공식적으로 고시되지 않고 거래 시기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
- 과거 북한은 무역환율과 비무역환율의 이중환율제를 유지하였지만,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해 감에 따라 비무역환율은 사용하지 않고 무역환율로 단일화되었음.

**라. 경제특구 관리체계**

□ 7.1조치 이후 북한은 경제특구를 확대, 발표하였음.

- 기존의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경제특구는 신의주 특별행정구(2002. 9), 금강산관광지구(2002. 11) 및 개성공업지구(2002. 11) 등임.

□ 각각의 특구는 차별화된 개방정책이 적용되었음.

- 4개의 경제특구중 개성과 금강산은 남북협력을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는데, 금강산은 관광특구 건설에, 개성은 공업단지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음.

- 반면, 라선과 신의주는 국제협력을 중시했음.

- o 라선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의 한 축으로서 북한식 경제특구의 건설을 목표로, 러시아 및 중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고려
- o 신의주는 홍콩식의 특별행정구건설을 목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으로 고려

<표 2-4> 북한 경제특구의 특징 및 관리체계 비교

	라진·선봉	신의주	금강산	개성	
<b>성격</b>	북한식 경제특구	홍콩식 특별행정구	관광특구	공업개발구	
<b>지정일</b>	1991. 12	2002. 9	2002. 11	2002. 11	
<b>근거법</b>	라선경제무역지대법(상설회의결정 28호)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상임위원회결정 3303호)	금강산관광지구법(상임위원회결정3413호)	개성공업지구법(상임위원회결정3430호)	
<b>위치</b>	함경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북도	
<b>면적</b>	746km <sup>2</sup>	132km <sup>2</sup>	100km <sup>2</sup>	66km <sup>2</sup>	
<b>설치목적</b>	무역 및 중개 수송,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국제 관광지역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 지역	
<b>사업지도 기관</b>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해당 중앙기관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기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	
<b>관세</b>	특혜관세	특혜관세	무관세	무관세	
<b>기업소유세</b>	- 결산이익의 14% - 예외적 감면조항	미정(특혜적인 세금제도, 새로운 특별행정구가 결정)	개발업자의 관광개발과 영업활동에는 비과세	- 결산이익의 14% - SOC, 경공업, 첨단과학 기술분야는 10%	
<b>유통화폐</b>	북한 원	외화(독자적 화폐금융정책)	전환성 외화	전환성 외화	
<b>외화반출입</b>	국외송금 가능	자유 반출입	자유 반출입	자유 반출입	
<b>외국인 참여</b>	- 단독·합영·합작 형식으로 기업설립·운영·투자 허용	- 행정장관을 신의주 특구 주민으로 규정 - 외국인도 신의 특구주민 가능	- 관리기구 구성시 남측 개발업자 추천 - 외부인도 참여 가능	- 금강산지구와 동일 - 관리위원장에 남측 인사 취임, 관리위원회에 남측인원 참여	
<b>환경보호</b>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단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투자 금지 제한 가능	환경오염 방지 명문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등의 환경보호 보장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투자금지 명시	
<b>자치권</b>	<b>범위</b>	일부 행정	입법, 행정, 사법	독자적 지도 및 관리	
	<b>입법</b>	-	입법회의	-	
	<b>사법</b>	-	특별구 재판소	-	
	<b>행정</b>	라선시 인민위원회	행정기관(행정장관)	지도 및 관리기관	지도 및 관리기관
<b>토지</b>	<b>소유주체</b>	국가	국가	국가	
	<b>개발주체</b>	라선시 인민위원회	행정구	개발업자	
	<b>입차기간</b>	구체 기간 명시 없음 임대기관의 승인하에 입차기간 연기 가능	- 2052년 12월 31일(연장 가능)	- 구체 기간 명시 없음 (현대아산에게 50년간 토지이용증 발급)	- 50년 (토지이용증 발급일로부터)
	<b>이용권</b>	관련규정 없음	양도, 임대, 제임대, 저당 가능	양도, 임대 가능	양도, 임대 가능
<b>비자유부</b>	무비자(초청장 필요)	비자발급	무비자(출입증명서필요)	무비자(출입증명서필요)	
<b>자유활동 보장</b>	투자자에게 지대내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거주민의 선거권, 노동권과 언론·출판·집회·시위·신앙의 자유 보장	관광객의 자유로운 관광 명문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체류자 구속, 체포, 가택수색 금지	

자료: 배종렬, “7.1조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변화,” 『수은 북한경제』(2007 여름호), p. 55.

## 마. 남북경협 관리체계

-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소위 '6·15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북한은 1998년 이후 실리중시의 경제정책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경제강국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성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북한이 대남 경협을 중시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완 측면에서의 남북경협
  -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점차 개방적 대외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왔음.
  -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무역분야의 정책수립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였음.
  -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경제특구의 지정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경제연수를 확대하는 등 개방준비를 위해 노력해왔음.
  -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대외경제관계 확대에 대한 인식 전환은 남북경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둘째,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의 남북경협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은 경제분야와 함께 정치·외교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이 중국이지만, 너무 높은 경제의존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음.
  - 결국,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 내지는 보완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 확대

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셋째, 2000년대 들어 대일관계 악화에 따른 새로운 경협 파트너의 필요
  -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북한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었음.
  -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로 인해 양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북일경협의 위축에는 일본의 경제제재와 함께 일본내 조총련계 기업들이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하에서 급격히 쇠퇴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넷째, 실리중시 경향에 따라 북한 주요 기관들이 남북경협에 경쟁적으로 참여
  - 북한 내부적으로 실리를 증시하면서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인 남북경협에 북한의 주요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남북경협을 자본·선진기술 획득의 기회로 인식하고, 북한경제발전 및 돈벌이 사업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 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경협 관련 기관 및 인사들이 부패혐의 등으로 숙청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의 교량 역할 기대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와 압박하고 있지만, 해제 이후에도 국제사회와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
  - 남북경협은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경학적·민족적 차원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 즉, 남북경협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협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 정부나 기업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대에 있어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북한이 대남 경협에 있어서의 경계요소
- 첫째, 과도한 대남 경제의존도에 대한 불안감
  - 북한은 한국과 경협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과도한 대남 경제의

존도로 인해 자신들의 주권이나 경제운용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임.

○ 따라서 남북경협은 북중경협을 비롯한 대외경제 전반의 틀 속에서 수준과 내용이 고려되고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둘째,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개혁·개방 등의 체제불안 요소 확산에 대한 우려

○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체제개혁 또는 대외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

○ 특히, 2007년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개성공단이 개방의 상징' 등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

○ 또한 남북한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지와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남북한 체제비교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체제이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은 남북경협을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인 문제로 함께 인식하고 있으며, 경협 참여자에 대한 내부적 통제 및 사상교양사업을 중시하고 있음.

- 셋째, 남북경제의 수직적 분업구조 경계

○ 북한은 남북경협 과정에서 한국측의 사양산업 이전이나, 북한의 단순 노동력만을 활용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음.

○ 북한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생명공학 등의 첨단산업분야의 협력을 원하고 있음.

○ 특히, 북한내 산업이 한국 산업의 단순 하청공장이나 낮은 수준의 산업 단지로 고착화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음.

#### □ 대남 경협 관리체제

- 북한은 남북경협에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로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정운업),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위원장: 공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당의 통일전선부의 지도를 받고 있음.

#### □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이하 민경협)

- 민경협은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내각산하 기관임.

- 내부적으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삼천리총회사, 광명성총회사, 개신무역총회사, 새별총회사, 명지총회사, 광복총회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금강산관리국,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북경·단동·연길·블라디보스톡의 대표부,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이 있음.

- 2008년 상반기 중 정운업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부들이 뇌물 및 사업부진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조직 전반의 변화가 예상됨.

#### □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이하 민화협)

- 민화협은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기구이지만, 북측의 민화협은 남측의 민화협과는 달리 사실상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임.

- 민화협은 주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전담하여 민경협과 역할을 분리하였으나, 최근 수년전부터 실리중시의 경향으로 인해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음.

#### □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이하 아태)

- 아태는 1990년 초반부터 일본, 대만 등 비수교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문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담당했음.

- 1997년 현대와의 금강산사업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위원장을 김용순 통전부장이 겸직함으로써 남북경협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김용순 사망 이후 다소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사실상 통전부의 외곽조직으로 현대와의 경협을 중심으로 대남 경협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북한은 남북경협에 대한 권한을 놓고 내각과 통일전선부 간의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들어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민경협의 사실상 전담기구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대남 사업의 특수성 및 당의 영도역할을 강조하면서 통전부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
- 이는 2007년 정상회담 과정에서 통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 조사 및 남북한 비교

#### 1. 북한의 무역관련 법률용어<sup>19)</sup>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문
가격	상품의 가치 또는 생산수단의 가치형태의 화폐적 표현	가격	price
가격규율	가격제정과 적용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질서. 국가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한 가격제정 절차와 방법을 말함.	-	-
가공무역	원료 또는 반제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그것을 가공한 후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형태. 수입한 원료, 반제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말함. 보세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됨.	가공무역	Improvement Trade
가공비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받아 가공, 조립하고 받는 대가	가공비	Manufacturing Fee
간접무역	거래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를 거쳐서 진행되는 무역. 중개무역이라고도 함.	간접무역	Indirect Foreign Trade
감가상각금	기물·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 소비자가격에는 해당업체의 건물, 기계의 가치감소분이 원가에 들어가 산정된 것임.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s

19) 무역관련 법률용어의 대상이 된 북한의 관련법은 ▲무역법(1997년 12월 제정, 2004년 12월 최종 수정보충) ▲가공무역법(2000. 12월 제정) ▲세관법(1983. 10월 제정, 2005. 8월 최종 수정보충) ▲원산지명법(2003. 8월 제정) 등임.

거침무역	무역화물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그 수송과정에서 제3국을 거치는 무역. 통과무역이라고도 함.	통과무역	Transit Trade
검역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하는 소독, 검진 등의 방역사업. 위생 검역, 동물검역, 식물검역 등이 있음.	검역	Quarantine
검역기관	검역을 담당하는 기관	검역당국	Quarantine Committee
검역증명서	동식물, 식료품 등의 수출입에 관해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음.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됨.	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결제	거래단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폐지불 관계. 국제결제는 거래가 무역거래인가 비무역거래인가에 따라 무역거래와 관련된 국제결제와 비무역거래와 관련된 국제결제로 구분.	결제	Payment
결제통화	국가 간의 경제거래에서 상품값을 치르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불거래를 위하여 쓰이는 화폐. 일반적으로 결제통화는 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밑에 지불거래를 하게되는 은행들 사이의 협약에 의해 규정됨.	결제통화	Currency of Settlement
계약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에 따른 합의.	계약	Contract
계약리행 담보금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	계약금, 계약보증금	Deposit
계획	사회경제발전의 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숫자적으로 미리 예견해 놓은 것.	계획	Plan

고정재산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 무형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의 3종류로 이루어져 있음. 회계 이론상으로는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 유형고정자산에는 건물·구조물·기계 장치·토지·건설 가계정(假計定) 등이 속하고,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특허권(特許權)·광업권 등이 속함. 투자와 기타 자산에는 투자 유가증권·관계회사 주식·관계회사 사채(社債)·출자금·장기 대부금 등이 속함.	고정자산	Fixed Assets
공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국민.	공민	Citizen
공업소유권	공업적인 발명·고안을 한자가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부여받게 되는 배타적인 전용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이 있음.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관세	해당 나라의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관세	Tariff
관세반환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관세환급	Customs Refund
관세부과	법률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교역물자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	관세부과	Tariff Imposition
관세특혜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아예 폐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상 대우를 해주는 일종의 할인관세.	특혜관세	Preferential Duty
교역조건	무역에서 수출품 가격변동과 수입품 가격변동의 호상관계를 표시하는 개념. 가격변동으로 매개나라가 무역에서 보게되는 손익관계를 나타냄.	교역조건	Terms of Trade
국가계획 기관	국가의 계획을 수립, 집행, 감독하는 중앙기관. 국가계획위원회를 지칭.	-	-

국가납부금	국가로부터 각종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하에 경영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입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적 성격의 납부금.	국세	National Tax
국가무역 지도위원회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위해 중앙무역 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설치하는 위원회. 국가무역지도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고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	-	-
국가유일 무역제도	노동계급의 국가가 대외무역 전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무역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제도. 국가유일무역 제도는 ①국가가 전문적인 무역기관을 창설하고 무역의 일원화체계를 세우며, ②국가가 대외시장과의 연계를 직접 맺으면서 무역기관들이 취급할 상품과 그들의 활동지역을 설정하여 주며, ③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무역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무역기관들이 무역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④국가가 상품수출과 수입, 외화관리 등 무역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외무역이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철저히 복무할 수 있게 함. 국가유일무역제도는 무역의 분권화와 자유화를 배격하고 무역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정확히 실현할 수 있게 함.	-	-
국경도착 가격	상품이 매수인이 있는 곳에 도착한 시점에서의 상품 가격. 생산자 가격에 운송비 등 도착할 때까지 들이간 비용이 가산됨.	도착가격	C.I.F.(Cost, Insurance, Freight) Price at Frontier

국경인도 가격	매도인이 관세국경(customs border)까지 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격. 보세도(in bond)가격이라고 하며, 이 가격은 원칙적으로 육상운송에 사용되는 가격이나 운송형태를 불문하고 사용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로 많이 불리우고 있다.	보세도, BWT	In Bond,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국내기준 가격	대외무역 거래시 기준이 되는 국내가격.	국내가격	Domestic Price
국영무역	국가가 민간 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수행. 무역의 이익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독점 무역의 형태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가 아니면 실시하지 않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끼리 공적 협정하에서 평상적으로 행하고 있음.	국영무역	State Trading
국제수지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거래한 것을 모두 집계한 계정. 거래의 형태에 따라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나누며, 경상 계정은 다시 무역 수지와 무역외 수지로 구분.	국제수지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기업소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 진행하는 경제단위. 기업소는 일정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진행하거나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여 얻은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진행.	기업	Enterprise
기준가격	표준가격이라고도 함. 협동경리부문에서 생산되는 일부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들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격체정기관에서 표준으로 정해주는 가격.	권장가격	Recommendation Price
대외기준 가격	대외무역 거래시 기준이 되는 가격	-	-
대외상품 검사기관	수출입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보건 위생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상품검사소	Testing House
독립채산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하에 경영상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	독립채산제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돈자리	예금 거래 대상자별로 거래정형을 기록 계산하기 위해 은행의 부기장부에 설정한 자리. 구좌라고도 함.	계좌	Account
라선경제 무역지대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	-
륙전기재	기관차, 객차, 화차, 자동차 등과 같이 바퀴로 움직이는 운수기재	운수	Transportation
면세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	면세	Duty-Free
무역가격	국가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국제시장에서 무역가격은 국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요공급 관계에 따라 결정.	무역가격	Trade Price
무역계약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무역 당사자 사이에 맺는 계약. 무역 계약에서는 무역 상품의 종류, 수량, 품질, 매도 조건, 금액, 대금 청산 방법 따위를 약정함.	무역계약	Trade Contract
무역계획	사회주의국가가 수출을 적극 늘리고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 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등이 포함됨.	-	-
무역사업 지도기관	무역계획에 따라 무역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중앙 정부기관. 무역성을 의미.	-	-
무역의 다각화	무역 대상국을 확대, 다양화 하는 것.	다각무역	Multilateral Trade
무역금융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일. 수출 금융, 수입 금융, 현지 금융으로 크게 구분됨.	무역금융	Trade Finance
무역수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의 수출입 거래로 생기는 국제 수지. 무역의수지와 함께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을 구성함.	무역수지	Trade Balance
무역적자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 무역상품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	무역적자	Trade Deficit
무역지불 협정	국가간의 무역거래에 따르는 화폐적 지불방법을 규제하는 협정. 일반적으로 경화가 부족한 국가들이 서로의 수출입 결제에 경화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	지불협정	Payment Agreement
무역편차금	수출입품의 국내 가격과 국제 시장 가격 간의 차로써 국가가 보상하거나 회수하는 금액.	가격차 보조금	Government Subsidy
무역항	상선이나 다른 나라의 배가 드나들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항구.	무역항	Trading Port

무역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출입 품목의 범위 따위의 무역에 관한 여러 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무역화물 수송계획	무역계획의 하나로 수출입이 계획되어 있는 물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송 시기, 물량, 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	-	-
무역환자 시세	북한 무역은행이 외화로 표시된 수출상품 대금을 무역화시에 내화로 지불하거나 수입상품 대금을 북한 무역회사로부터 내화로 받을 때 적용하는 외화와 내화의 교환비율.	환율	Foreign Exchange Rate
무역회사	외국과의 상품수출입거래를 전문으로 담당 수행하는 상업기업소. 북한의 무역회사는 모두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하에 있는 국영기업소임.	무역회사	Trading Company
무현금결제	은행에서 예금 돈자리를 통해 환지의 방법으로 문건상으로만 진행되는 결제형태.	-	-
밀수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밀수	Smuggling
배짐명세서	외국 화물을 실은 선박이 입항할 때 선장이 입항 24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선적 화물의 명세서. 배 이름, 국적, 하인(荷印), 번호, 품명, 출하주(出荷主), 하수인(荷受人), 수량, 무게, 부피 따위를 상세히 기입해야 함.	선적명세서, 적화목록(積貨目録)	Shipping Specification
번 외화	무역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외환수입(外換收入)	Foreign Exchange Revenues
보세창고	보세구역의 하나로, 관세를 물거나 하는 따위의 수입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을 넣어 두는 창고.	보세창고	BW(Bonded Warehouse)
보장성원	일이나 사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거나 담보해주는 인력.	지원인력	Supporter
보통관세를	어떤 특혜나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관세를 적용하는 것.	일반관세율	General Tariff Rate
봉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서비스, 용역	Service
봉인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거나, 그렇게 찍힌 도장	봉인	Sealing
비관세장벽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 수입물자에 대한 수량제한이나 할당, 관세 이외의 별도의 세금 부여 등이 있음.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비무역수지	상품무역수지와 더불어 국제수지의 경상수지(계정)를 구성하는 항목. 주된 것으로는 해운·공운(空運) 등의 운임, 보험·투자수익·특허료·여행자지출·광고·통신 등의 해외거래, 증여 등이 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거래라는 의미에서 무형무역이라고도 함.	무역외수지	Blance of Invisible Trade
사회협동단체	직맹, 사로정, 농근맹 등의 사회단체와 협동동장으로 대변되는 협동단체를 포괄하는 말.	-	-
상금	사회를 위해 창조한 사회적 생산물의 일부를 모범적인 일군들에게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보수형태	상금(격려금), 인센티브	Incentive
생산계획	일정한 기간에 인민경제의 개별적 부문 또는 생산단위들에서 수행해야 할 생산과제를 규정하는 계획항목. 생산계획에는 공업생산계획, 농업생산계획, 기본건설생산계획 등이 들어감.	생산계획	Production Planning
선불금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금액.	계약금	deposit
세관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화물·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수출입의 허가 및 단속과, 관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세관	Custom House
수입검사	세관에서 수입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수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수입품을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며 밀무역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수입검사	Custom Inspection
수입계획	무역계획의 하나로, 수입물자에 관련된 계획	-	Import Plan
수출검사	수출품의 제조·생산이 완료되면 수출통관절차에 앞서 수출검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서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제도. 이는 수출 물품의 대외성가를 유지하고 위장·불법 수출을 방지하며 관세환급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수출검사	Export Inspection
수출계획	무역계획의 하나로, 수출물자에 관련된 계획	-	Export Plan

수출협동품 생산계획	여러 부문, 기업소들 간 또는 기업소 내 여러 직장들 사이의 생산적 연계를 통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계획.	-	-
신용대부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 없이 인적인 신용만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대부방식. 무담보대부라고도 함. 물적 담보가 있는 대부를 담보대부라고 함. 신용대부의 경우에도 물적 담보는 없으나 인적 담보로 차주 이외의 채무보증을 받음.	신용대부, 신용대출	Credit Loan
신용장 결제방식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방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음.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신용장 (L/C)결제 방식	Letter of Credit
영업허가증	무역회사가 대외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	영업허가증	Business License
운임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수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송용역)의 가격.	운송료, 운송비	Freight(Transportation) fare
원산지명	물건의 생산지 또는 제조지	원산지	Place of Origin
원산지명등록 신청접수증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신청한 것에 대한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위생검역 신청서	농산물 등의 위생 및 검역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위한 신청서류	농산물 품질관리 시스템	Quality System Assessment
위탁수출입	수출입업자가 외국의 상인이나 제3의 전문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판매나 구매를 맡기는 일.	위탁무역	Consignment Imports and Exports
인민경제 계획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계획	-	-
자금거래	국가의 경제 관리·운영과 기업소의 경영 활동에 쓰는 돈의 거래.	자금거래	Fund Transaction
자연부원	사회의 경제적인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천연자원.	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장려금	노동정량과 제품의 질,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자재를 절약하며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생활비 외에 더주는 사회주의 노동보수의 한 형태.	장려금	Bounty
저작권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작품 등에 대해 이를 쓰거나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인격적 및 재산상의 권리.	저작권	Copyright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일정한 중계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 이때 중계화물이 일단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때에는 통과무역이 추가됨. 자국에서 중계화물을 제품화하여 수요국에 수출하게 되면 중계가 공무역이 됨.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중앙무역 지도기관	북한의 무역성을 지칭.	-	-
중앙세관 지도기관	북한의 세관 당국을 지칭.	세관	Custom House
중앙재정 지도기관	북한 재정성을 지칭.	-	-
중재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	Arbitration
중재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서 국가 경제 계획에 기초한 계약을 이행할 때 제기되는 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기관	중재원	Arbitration Board
지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약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의미.	지대	Belt
지대관리 운영기관	라진·선봉 인민위원회를 지칭. 중앙정부의 위임에 따라 라진·선봉지대의 관리를 담당.	-	-
지방무역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앙무역과 대비되는 개념.	-	-

지적소유권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특수경제 지대	북한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별도의 분리된 지역. 19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라진·선봉지역을 선정한 이후 특수경제지대는 사실상 라진·선봉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일종의 경제특구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협의	상사분쟁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	합의	Consent

## 2.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용어<sup>20)</sup>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문
감가상각금	기물·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 소비자가격에는 해당업체의 건물, 기계의 가치감소분이 원가에 들어가 산정된 것임.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s
거래세	국가가 생산물의 거래나 봉사제공과 관련하여 받아들이는 세금. 북한에서 거래세는 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 운영과 관련된 것. 거래세와 관련한 내용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과 세금법 시행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거래세	Transfer Tax

20) 북한의 투자용어 관련 분석 법률은 ▲외국인투자법(1992. 10월 제정, 2004년 11월 최종 수정보충) ▲합영법(1984. 9월 제정, 2004. 11월 최종 수정보충) ▲합영법 시행규정(2000. 3월 제정, 2005. 1월 최종 수정) ▲합작법(1992. 10월 제정, 2004. 11월 최종 수정보충) ▲합작법 시행규정(2000. 3월 제정, 2004. 12월 수정보충) ▲외국인기업법(1992. 10월 제정, 2005. 5월 최종 수정보충)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2000. 10월 제정, 2005년 8월 최종 수정보충) 등임.

건본	본보기로 되는 물건	건본	Sample
결산	일정한 기간(월, 분기, 년도)의 경리활동 정형을 총화하는 것	결산, 기업회계	Settlement of Accounts
결산년도	경영활동에 대한 계산을 마감하고 총화하는 기간으로 되는 년도. 결산년도는 국가예산이 아닌 기업활동과 관련된 개념임. 북한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사업연도	Business Year(Term)
결산리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업소 경영활동 결과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소 이윤. 이 이윤이 결산시에 확정된다고 하여 확정이윤, 계획이윤과 대비하여 실적이윤이라고도 함. 북한에서 결산이윤은 월, 분기, 년간으로 확정됨. 결산리윤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국가에 산수입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이윤	Profit
결산분배	결산기간의 생산 및 재정 활동을 총화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하는 사업. 북한에서 결산분배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진행.	이윤분배	Profit Sharing
경제기술 타산서	경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향후 진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문건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	Feasibility Study Report
고정재산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 무형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의 3종류로 이루어져 있음. 회계 이론상으로는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 유형고정자산에는 건물·구조물·기계 장치·토지·건설 가계정(假計定) 등이 속하고,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특허권(特許權)·광업권 등이 속함. 투자와 기타 자산에는 투자 유가증권·관계회사 주식·관계회사 사채(社債)·출자금·장기 대부금 등이 속함.	고정자산	Fixed Assets

공업도안권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 남한에서는 '의장권'이라고 하였으나, 2004년 12월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변경.	디자인권	Design Right
공업소유권	공업적인 발명·고안을 한자가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부여받게 되는 배타적인 전용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있음.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기술비결	산업상의 기술에 관한 비법·비결·특허권·저작권 등 제조설비의 완성·운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지식.	기술노하우	Technical know-how
기술이전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또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다른 기업으로 기술을 넘겨주는 일.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기업해산 신청문건	합작당사자들이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에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동 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해산근거를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첨부해야 함.	기업파산 신청	Petition for Bankruptcy
대리인	타인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는 사람.	대리인	Agent
대리점	일정한 회사 따위의 위탁을 받아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하는 업체	대행사	Agency
대외상품 검사문건	수출입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보건 위생에 관한 검사	수출입 상품검사	Inspection of Imports and Exports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북한의 도 및 직할시의 지방행정기관.	-	-
등록자본	해당 관청에 신고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등록자산	Registered Assets
노동규율	집단적인 공동 노동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	노동규정	Labor Regulations
노동보수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여, 봉급, 수당, 상여금 등이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됨.	임금	Wages
로력비	노동 임금.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	임금	Wages

로력알선 기관	합영·합작기업과 외자기업에 필요한 노동인력 공급을 담당해주는 복측 기관	-	-
유동자금	사회주의 기업소의 유동재산과 유동재산에 투하된 자금을 총칭하는 말.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적 저장품, 미성품, 반제품 등에 투하되며 유동단계에서는 완제품, 발송한 제품, 화폐재산 등에 투하됨.	유동자금	Liquid Money(Fund)
리사회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익(금)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	이익	Profit
문화후생 기금	기업소들에서 근로자들의 공동적인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한 수요에 사용되는 기금. 문화후생기금은 기업 이윤의 일부로 적립됨.	복리후생 기금	Welfare Fund
물자구입 경비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 자재를 비롯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이 비용에는 수송비, 상하차비, 선별비, 보관비 등이 포함.	구매경비	Purchasing Expenses
반출입승인 신청문건	투자물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외국으로 내가려고 할 때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수출입 신청서류	Application for Import and Export
보험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동된 사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보험	Insurance
보험후생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봉사부문	사회서비스 부문	서비스 부문	Service Sector
분배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생산물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나누는 일	분배	Distribution
상금	사회를 위해 창조한 사회적 생산물의 일부를 모범적인 일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보수형태	상금(격려금), 인센티브	Incentive

상속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상속	Inheritance
상표권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음.	상표권	Trademark Right
상환	채무나 손실 등을 변제하는 것.	상환	Redemption
새끼회사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자회사	Subsidiary Company
설비갱신	생산설비를 고치거나 교체하는 것.	설비교체	Replacement of plants and equipment
세금감면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세금감면	Tax Cut
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소득세	Income Tax
송금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국내외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	송금	Remittance
송금신청 문건	북한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동 문건에는 해당 내용을 밝히고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해야 함.	송금신청서	Remittance Application
수출입허가 신청문건	기술이나 저작권유권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고 할 경우에 해당 중앙기관(지대에서는 지대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수출입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s and Exports Permission
시제품	제품 출하전에 시장평가 및 성능시험 등을 위해 만든 제품	시제품	Prototype
신소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	신소	Civil Application
양도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양도, 이양	Assignment
양성기금	유능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한 기금	인력양성 기금	Training and Education Fund



예비기금	결산이익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산을 매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사용할 수 있음.	예비기금	Reserve Fund
외국기업	북한 내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 기관, 기업체,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	외국기업	Foreign Company
외국인기업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Foreign Investment Firm
외국투자자	북한내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Foreign Investor
외국투자기업	북한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을 말함	외자기업	Foreign Affiliate
외국환자은행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북한의 외환전문은행은 무역은행임.	외국환은행	Foreign Exchange Bank
외화관리	국제수지의 균형과 외국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직접 관리·규제하는 것.	외화관리(환관리)	Exchange Control
외화교환시세	외환을 교환할 시점의 환율수준	환율시세	Foreign Exchange Rate
외화돈자리	외환거래 계좌	외환계좌	Foreign Exchange Rate Account
은행대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이나 담보물, 보증인 등을 고려해서 상환기간이나 이율 따위를 약정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	은행대출	Bank Advances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등이 해당.	재산권	Property Right
재정검열원	종업원이 아닌 성원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함.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해 이사회 앞에 책임짐.	감사	Auditor
조선원돈자리	북한 원화를 거래하는 은행계좌	계좌	Account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무역성의 경제협조관리국을 지칭.	-	-
중재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	Arbitration

중재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서 국가 경제 계획에 기초한 계약을 이행할 때 제기되는 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기관	중재원	Arbitration Board
지사	본사에서 갈려 나가, 본사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일을 대신 맡아하는 곳.	지사	Branch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 문학 및 과학작품·연출·공연·음반 발명·공업의장·등록상표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예술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모든 권리로 법적인 보호를 받음.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저작권으로 구분됨.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직업동맹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조직	노동조합	Labor Union
채권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Credit, Claim
채무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일반적으로 금전적 빚을 의미.	채무	Debt
청산	회사, 조합 따위의 법인이 파산이나 해산에 의하여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 판계를 정리하는 일.	청산	Liquidation
청산위원회	합영, 합작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 투자 당사자 및 관계기관 간의 공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채권단협의회	-
출자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자금이 나 그 밖의 재산을 내는 것.	출자	Financing
출자몫	개인이나 법인의 각자 출자비율	지분	Quota
출자액	기업의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들이 내는 자금. 출자액은 기업을 창설할 때 또는 이미 운영중인 기업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법인들이 내는 자금.	출자액	Amount of Investment
출장소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본사나 본점 이외의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무소	출장사무소	Branch Office

특수경제 지대	북한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별도의 분리된 지역. 19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라진·선봉지역을 선정한 이후 특수경제지대는 사실상 라진·선봉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일종의 경제특구임.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파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	파산	Bankruptcy
하부구조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말함.	인프라 스트럭처	Infrastructure
합영기업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합영기업	Equity Joint Venture
합작기업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분배하는 기업.	합작기업	Joint-Venture
현물재산	투자자산은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 실물자산은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골동품, 우표, 금, 기념주화 등처럼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함.	실물자산	Real Assets
협의	상사분쟁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	합의	Consent
화폐재산	기관, 기업소 등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그 밖의 화폐적 형태의 모든 재산. 여기에는 기관 및 기업소가 가지고 있는 현금잔고와 돈자리잔고, 기타 화폐재산(우표, 엽서, 수입인지) 등이 속함.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회계결산	기업회계상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임. 회계결산의 주요 업무내용은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재산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로 대별됨.	회계결산	Settlement of Accounts

### 3. 북한의 기타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sup>21)</sup>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 문
거래잔고액	거래후 계좌에 남은 금액	거래잔고	Balance of Clearing
검열	사업정형을 알아보고 지도 통제하는 것.	검열	Inspection
결제환자 시세	대외결제시의 환율시세	결제(환율) 시세	Settlement Exchange Rate
경비	경리운영을 위해 쓰이는 쓰는 비용. 일반적으로 예산제 기관들에서 국가로부터 받아쓰는 자금.	경비	Expenses, Cost
계약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에 따른 합의.	계약	Contract
계약리행	쌍방이 합의한 계약을 실행하는 것.	계약이행	Execute a Contract
계약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계약서	Contract Document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Conclusion of a Contract
고정환자 시세	외환의 수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시세	고정환율	Fixed Exchange Rate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공증	Notarial Act
국가외화 관리기관	외환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북한에서는 조선무역은행이 이를 담당함.	-	-
국가외화 돈자리	국가가 외화거래를 위해 대외결제은행에 개설한 계좌.	외환계좌	Foreign Exchange Account
국가외화 의무납부률	기관, 기업소별로 국가에 외화를 납부하도록 할당한 의무비율	-	-
국가채권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채권. 내국채와 외국채가 있는데, 지방채와 함께 공채라 하여 사채와 구별함.	국채 (국가채권)	National Debt

21) 기타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의 대상 법률은 ▲외화관리법(1993. 1월 제정, 2004. 11월 최종 수정보충) ▲외화관리법 시행규정(2002. 3월 제정, 2004. 12월 수정보충) ▲대외경제계약법(1995. 2월 제정, 1999. 2월 수정보충) ▲대외경제중재법(1999. 7월 제정) ▲대외민사판례법(1995. 9월 제정, 1998. 12월 수정), ▲저작권법(2001. 3월 제정) 등임.

귀금속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금화, 은화,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기타 귀금속이 속함.	귀금속	Precious Metals
금융거래	상업은행의 채권, 채무, 중앙은행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	금융거래	Finance Transaction
대금청구	어음·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	상환청구, 소구	Recourse, Ruckgriff
대리인	타인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는 사람.	대리인	Agent
대부	대출	대출	Loan
대부리자율	대출한 돈에 대한 이자. 대부 이자와 할인율로 구분.	대출이자율	Loan Rate
대외결제	국가간 또는 나라가 다른 거래자들 사이에 무역 및 비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화폐적 채권 채무의 청산관계. 국제결제라고도 함.	대외결제	Foreign Settlement
대외결제 은행	국제적인 금융거래 업무를 맡아하는 은행. 북한에서는 무역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대외결제 은행임. 국제적인 대외결제 은행들과 정상적인 업무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들과 사전에 '은행거래협정'(코레스계약)을 맺어야 함.	외국환은행	Foreign Exchange Bank
돈자리	예금 거래 대상자별로 거래정형을 기록 계산하기 위해 은행의 부기장부에 설정한 자리. 구좌라고도 함.	계좌	Account
려비	사업상 용무로 다니는 일군들에게 차비와 숙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렬비는 기업소관리비 또는 경비예산 항목에서 지출.	여비	Traveling Expenses
려행신용장	해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덜고 여행 현지 은행에서 그 나라 통화를 찾아쓰는 신용장의 한 종류.	여행자 신용장	Traveler L/C
려행행표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수표. 국내 은행에 미리 돈을 맡기고 외국에 가서 찾아 쓸 수 있음.	여행자수표	Traveler's Check(T.C)
로임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화폐로 받는 노동보수형태	임금	Wages
류동고	일정한 기간안에 일어난 경영자금의 변동정형을 반영하는 부기계산자리지표.	계정	account

류동고 일람표	부기계산자리지표들을 체계적으로 배열 종합하여 대조 검토할 수 있게 만든 일람표.	계정조직	Account System
리윤	기업의 총수입에서 임대, 지대, 이자, 감가상각비 따위를 빼고 남는 순이익	이윤	Profit
리자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이자	Interest
몰수	범죄의 반복,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	몰수	Confiscation
무역거래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련되는 경제거래.	무역거래	Visible Trade
무역은행	대외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의 은행	-	-
민사	공민, 기관, 단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상 또는 인격적 관계	민사	Civil Affairs
번 외화	무역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외환수입 (外換收入)	Foreign Exchange Revenues
변상금	남에게 진 빚이나 손해를 갚는 금액	변상금	Indemnity
봉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서비스, 용역	Service
봉사료	서비스 이용 요금	요금, 서비스사용료	Fare
분쟁해결	상업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것.	분쟁조정	Grievance Mediation
비무역거래	대표부 유지, 대표단 렬비, 리자, 리익배 당금과 같은 지불거래, 관광, 체신, 향만, 봉사제공과 관련된 거래, 상속, 보증과 관련된 지불거래	무역외거래	Invisible Trade
비전환성 외화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전환될 수 없는 외국은행권, 보조주화가 속함.	불환권, 불환지폐	Inconvertible Note
비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비준	Ratification
상환담보증	채무변제 보증금	상환보증금, 채무변제 보증금	Recourse Deposit
소득금	개인 또는 법인이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여 얻는 금액	소득	Income
손해보상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손해배상	Indemnity

송금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국내외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	송금	Remittance
수수료	국가·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	수수료	Commission
수표	문서에서 성명 및 상호의 표시를 이르는 말. 서명 또는 사인.	서명, 사인	Signature
수형	발행자가 지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어음이라고 함.	어음	Bill
신용장	은행이 거래하는 편의 의뢰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용보증 문서. 수입업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상업신용장과 해외여행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여행신용장이 있음.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신탁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부터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신탁	Trust
양도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	양도, 이양	Assignment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음.	양도성 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CD)
연체료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	연체료	Arrear
예금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을 맡기는 일 또는 맡긴 돈.	예금	Deposit
외국환자 시세	외환시세	외환시세	Foreign Exchange Rate
외국환자 업무	외환거래 업무	외환업무	Foreign Exchange Affairs
외화거래	외화를 사고 파는 행위	환거래	Exchange Transactions
외화관리	외화의 조성과 보관, 분배비용에 대한 조직과 지휘.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자체의 외수입에 의해 지출을 보장하고 충분한 외화예비를 조성하는 것.	외환관리	Foreign Exchange Control
외화교환 증명문건	외화교환소에 외화를 바꾸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외환거래 계산서	-
외화대부	필요한 자금을 외환으로 대출받는 것.	외환대출	Foreign Exchange Loan

외화수입 지출계획	일정기간 동안 외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계획	-	-
외화예금	외국환으로 외국환 은행에 맡기는 예금	외화예금	Foreign Currency Deposit
외화유가 증권	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주식, 출자증서 등의 증권이 속함.	외화채권	Foreign Currency Bonds
외화준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에 대한 지불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 및 외화자금	외환보유고	Foreign Exchange Holding
외화지불 수단	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예금 및 저금 증서, 지불지시서, 각종 신용카드 등이 속함.	외화표시 지불수단	Settlement in foreign money
외화차입금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외화자금.	외화차입금	Foreign Exchange Debt
외화채권	액면 금액이 외화나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되어 있지만 일정한 환율에 의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채권.	외화채권	Foreign Currency Bonds
위약금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위약금, 약정금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위임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	위임	Mandate
위탁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위탁	Trust
은행거래 협정	외국환 은행이 세계 여러은행과 외국환 업무 전반에 걸쳐 맺는 계약, 환거래 계약이라고도 함.	환거래계약, 코레스계약	Correspondent Arrangement
자본거래	직접투자, 민간투자, 정부투자, 신탁,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과 취득, 부동산 취득 등의 거래	자본거래	Capital Transaction
재결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함.	재결	Decision
저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힘.	담보	Mortgage
전환성의외화	전환성이 있는 외국화폐, 유가증권, 지불수단, 귀금속 등이 속함.	태환권, 태환지폐	Convertible Note
중앙예산제 기관	중앙정부의 예산에 편성된 기관으로, 중앙공업을 비롯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등이 이에 해당됨.	정부출자 기관	-

중앙재정 지도기관	내각의 재정성	-	-
중재	본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본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	Arbitration
지방예산계 기관	지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으로, 지방 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지방공업, 농업 및 지방행정기관 관할의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됨.	지방정부 출자기관	-
지불거래	화폐거래 단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폐지불관계.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생산물의 유통을 화폐를 매개로 진행. 대외무역에서 상품 구입시 구매자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화폐(외환)을 지불함.	지불거래	Payment Transaction
지불위탁	환어음, 수표 따위와 같이 어떤 사람이 남에게 위탁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일.	지급위탁	Consignment of Payment
지불협정	국가 간의 수출입 결제에 있어서 경화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맺는 협정.	지급협정	Payment Agreement
직접투자	어떤 기업이 외국의 기업에 대해 경영참가 또는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투자를 행하는 일.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
차관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등이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	차관	Loan
채무보증	제삼자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일	채무보증	Guarantee of an Obligation
청구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	청구	Claim
청산	회사, 조합 따위의 법인이 파산이나 해산에 의하여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일.	청산	Liquidation
통신료	우표, 통신 등의 통신사용 요금	정보통신 이용료	Information and Communicati on Fare
텔레кс	전화의 자동 교환과 인쇄 전신의 기술을 이용한 기록 통신 방식. 다이얼 따위로 상대 가입자를 호출하여 인쇄 송신기로 통신문을 보내면 상대방의 인쇄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기록.	가입전신, 텔레кс	Telex

투자	일정한 대상에 대한 자금 또는 자본의 지출	투자	Investment
팩스	팩스	팩스	Fax
해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돈.	해약금	Cancellation Fee
행표	은행계좌를 활용한 지불결제 수단	수표	Check
현금환자 시세	현금에 대한 환율시세	환율	Foreign Exchange Rate
회사채권	기업이 발행한 채권	회사채	Corporate Bonds
회수금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국가가 도로 거두어들이는 금액	환수금	Redemption

#### 4.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법률용어<sup>22)</sup>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 문
개별적인 사람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자연인	Individual
거주자확정	거주자를 판정하는 절차	거주자판정	Decision of Resident
경영활동	기업의 경영활동	사업활동	Business
계약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계약서	Contract Document
고정영업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함.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함.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공업도안권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 남한에서는 ‘의장권’이라고 하였으나, 2004년 12월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변경.	디자인권	Design Right

22) 남북경협 관련 대상 법률은 북남경제협력법(2005. 7월 제정)과 4대 경협 합의서(투자보장, 이종과 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창산결제)임. 그러나 남북경협 4대보장합의서의 경우 남북이 함께 만들고 합의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법률용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공채	국공채란 국가나 지방정부도 민간기업과 같이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	국공채	National and Public Bond
규약	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기업리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이권	Rights and Interests of Company
로력	노동력	노동력	Labor
몰수	국가가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특정한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수용	Expropriation
물품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물자 및 제품.	재화	Goods
방조	거들어서 도와주는 것.	협력	Cooperation
보호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보장	Guarantee
봉사거래 대금	서비스 거래 대금	용역거래 대금	Fare

## 5. 평가 및 문제점

- 북한은 1992년 라진·선봉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을 계기를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대외경제 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제정하였음.
- 남북한 간의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함.
  - 우선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이 남한에 비해 개방수준은 물론 경제발전 수준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으로써, 남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지만 북한에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또한 남북한 간의 경제체제와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용어라 해도 실제 의미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이와 함께 북한의 경우 전자상거래, 원산지증명, 지적재산권 등의 최근 국제무역 규범이나 변화 등과 관련된 법률제정이 미흡하거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련 용어의 경우 남북한 간의 용어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됨.

- 남북한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하나는 남북이 상이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의미 전달과 무역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임.
  - 다른 하나는 남북한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나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그 의미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 사업에서 오해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임.
- 우선, 남북한이 상이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임.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협력’은 남한의 ‘합의’를 의미함.
    - o 즉, 북한의 ‘협력’은 당사분쟁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한의 합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o 반면, 남한에서 협의는 양측의 이견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합의와는 차이가 있음.
    - o 따라서 합의서 작성 및 해석에 있어 협의를 북한은 사실상 합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북한의 ‘외화준비’는 남한의 ‘외환보유고’를 의미함.
    - o ‘외화준비’는 국가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에 대한 외화지불을 위해 준비하는 외화나 금으로 남한의 ‘외환보유고’를 말함.
    - o 개별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외환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님.
  - 북한의 ‘은행거래 협정’은 남한의 ‘환거래 계약’(코레스 계약)을 의미함.
    - o 북한의 ‘은행거래 협정’은 외국환 전문은행이 세계 여러 은행과 외국환 전반에 걸쳐 맺는 계약임.
    - o 이를 단순히 은행 구좌거래 정도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북한의 ‘공업소유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인 ‘산업재산권’을 의미함.

- 북한의 '공업소유권'을 공장 건물이나 설비 등과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북한에서 '봉사'는 '서비스'나 '용역'을 의미함.
  - 남한의 경우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로, 비경제적인 용어임.
- 남북한이 대외경제 관련 법률용어의 차이로 인한 문제보다는 동일한 용어의 의미차이로 인한 문제가 현장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용어자체가 다른 경우 합의서에 남북한의 용어를 병기하거나 영문을 병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동일한 용어의 경우 합의서나 계약서 체결 당시 큰 문제가 없다가 이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면, 북한의 '국내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계획경제 하에서 국가가 대외무역 거래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해서 제시한 것을 의미함.
    - 이는 남한의 국내가격처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서 내린 기준가격임.
    - 가격과 관련된 의미상의 차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남북한 모두 '무역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남한의 경우 국제 및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국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한 무역가격을 의미함.
  - 또한 남북한 모두 '교역조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북한에서 '교역조건'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변동으로 각국이 무역에서 보게 되는 손익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반면, 남한에서는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또는 재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따라서 교역조건이 단순히 무역의 손익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및 수입에 있어 무역경쟁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남북한 간에는 무역용어 상의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시장경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대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해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북한은 대외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 간의 무역관련 법률 및 제도상의 용어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북한의 대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무역용어가 점차 확대될 것이며, 무역발전 초기 단계에 남한의 무역용어가 남북한의 통일무역용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자료를 북한에게 제공하고, 용어통일을 위한 남북한 간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제4장 남북한 무역실무 분야별용어 비교23)

### 1. 무역일반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 문
가공무역	원료 또는 반제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그것을 가공한 후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형태. 수입한 원료, 반제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말함. 보세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됨.	가공무역	Improvement Trade
간접 수입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 다른 나라 증개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	간접 수입	Indirect Import
간접 수출	무역상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	간접 수출	Indirect Export
검역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을 막기위해 하는 소독, 검진 등의 방역사업. 위생검역, 동물검역, 식물검역 등이 있음.	검역	Quarantine
검역증명서	동식물, 식료품 등의 수출입에 관해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음.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 서류에 포함됨.	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관리무역	정부가 수출입 총액, 무역 내용, 결제 방식 따위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무역.	관리무역	Managed Trade
거래조건	상품의 품질, 가격 등 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건.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의 교환 비율.	교역조건	Terms of Trade
맞바꿈무역	수출입 물품의 대금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 무역 거래 방식.	구상무역	Trade on Compensation Basis

23) ① 무역 및 국제거래에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협조를 얻어 작성된 자료로서 공식적인 북측의 무역용어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② 북측의 국제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기준한 것으로 공식적인 표준 북한어와 차이날 수 있음. ③ 남측 무역용어와 차이가 나는 북측용어는 견고 디체로 표시하였음. ④ 북측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무역용어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남측 무역용어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용어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국가위험	투자대상국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현지국정부나 현지 상대기업의 해외자입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투자대상국에 제공된 투자, 또는 차관에 대한 당해국가 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상의 위험도.	국가위험	Country Risk
국영무역	국가가 민간 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수행. 무역의 이익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독점 무역의 형태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가 아니면 실시하지 않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끼리 공격 협정하에서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음.	국영무역	State Trading
국제무역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무역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기술수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기술수출	Export of Technique
긴급수입 제한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긴급수입 제한조치	Safe guards
무역의 다각화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하는 무역. 각국의 수출입 균형을 위하여 다각적인 무역을 행하고서 전체로서 채권·채무를 상계(相計)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무역 수지 균형을 이루기가 비교적 쉽고,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음	다각무역	Multilateral Trade
계획적인 행동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	담합행위	CA (Concerted Action)
맞수입	무역거래에서, 수출을 하는 대가로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덤핑	채산(採算)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投賣)하는 일.	덤핑	Dumping
무역금융	수출입 거래 당사자, 국제결제를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수출입업자들에게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	무역금융	Foreign Trade Finance
무역대리업	수출입 거래 당사자의 중개인 입장에서 외국 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부대행위를 하는 직업.	무역대리업	Trade Agent
비무역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의 봉사거래에 의한 입출금관계를 집계한 항목.	무역외수지	Balance of Invisible Trade
무역적자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 따르는 대금의 수불(受拂)의 적자.	무역적자	Trade deficit



물물교환	화폐 등의 매개 없이 재화와 재화를 직접 교환하는 일.	물물교환	Barter Trade
밀무역	국가에서 금한 물품을 외국과 몰래 거래하는 행위.	밀무역	Smuggling Trade
거래수익금 거래세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비상위험	계약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위험	비상위험	Political Risk(= Emergency Risk)
설비수출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것으로 금액이 거대하고 설비 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설과 엔지니어링 등을 같이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무역과 구분됨.	산업설비 수출	
산업피해 규제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덤핑수입되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규제조치	산업피해 규제	
삼각무역	상대국과의 사이에 제 3 국을 개입시켜서 상대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제 3 국가의 무역을 통해서 수지균형을 꾀하는 무역방법	삼각무역	Triangular Trade
비무역 수출입	금융, 운수, 여행, 건설, 정보통신 등 상품 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	서비스무역	Service Trade
선물거래	앞으로의 어떤 시점에서 진행되게 될 어떤 상품의 거래조건을 오늘의 시점에서 미리 합의하는 거래	선물거래	Sale by Future Goods
세계무역 기구	자본주의나라들이 위기에 처한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을 대신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무역기구	세계무역 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소포우편	어떤 물건을 포장하여 보내는 우편.	소포우편	Parcel Post
수입 쿼터제	정부가 수입이자유화품목(IQ품목)에 대해 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을 할 당하는 제도.	수입 쿼터제	IQS (Import Quota System)
수입검사	해당 나라의 세관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수입 신고서대로 화물이 정확히 수입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검사.	수입검사	Inspection

수입승인서	무역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외국 관행 은행장으로부터 받는 증서	수입승인서	Import License
수출금융	수출업자와 수출품 생산업자를 위한 금융. 생산 집하 자금, 원자재 수입 자금, 완제품 구입 자금 따위로 이루어짐	수출금융	Export Financing
수출보험	수출 무역에서, 보통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수출업자나 그 용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순이익	총이익에서 영업비, 잡비 따위의 총비용을 빼고 남은 순전한 이익.	순이익	NG (Net Gain)
승인	국제법에서,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새로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	승인	License
시가의 변동	무역상품은 시가변동이 격심한 경우 가격표에 (가격은 시가변동조건부이다)와 같은 시가변동조건부라는 취지를 명시함.	시가의 변동	Market Fluctuations
시장세분화	나이, 직업, 지역, 기호 따위에 따라 시장을 자세하게 나누고 소비자에게 알맞게 팔 계획을 세우는 일.	시장세분화	Market segmentation
시장의 상실	화물의 지연이나 손상 때문에 그 시가가 하락하거나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것.	시장의 상실	Loss of Market
시황보고	거래처에 보내는 자국시장의 시황보고서	시황보고	Market Report
신용상태	거래처 선정에 있어서 재정상태와 영업상태가 좋은 상태. 즉,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	신용상태	Business Standing
신용위험	수출거래를 비롯한 각종거래에 있어서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	신용위험	Credit Risk
역내무역	EU, NAFTA 등의 경제블럭내의 거래	역내무역	Intra-trade
외화보유량	한 나라가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외화보유고	Foreign Exchange Holdings
위탁가공 무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	위탁가공 무역	Inverse Processing Deal Trade
위탁자	위탁매입에 있어서 수탁자를 지칭.	위탁자	Indentee
위탁판매 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	위탁판매 수출	Consignment Export Trade
유엔무역 개발회의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4년에 유엔이 설립한 기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부여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정하여 실시 중	유엔무역 개발회의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

자동수입 쿼터제	정부가 수입비자유화품목(IQ품목)에 대해 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하여 수입을 할당하는 제도.	자동수입 쿼터제	AIQS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자동승인 품목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수입 금지품) 또는 제한하여(수입제한품)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모두 수입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품목에 해당.	자동승인 품목	AAI (Automatic Approval Items)
자유무역 지구	같은 항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장치, 보수, 조립 등의 작업은 인정하지만 가공, 제조나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	자유무역 지구	Free Port District
자유무역 지대	중계무역, 중계가공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이항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모든 관세를 지급하지 않는 자유항구를 말한다. 자유항에는 4가지 종류 즉, 자유항시, 자유항구, 자유무역지구, 외국무역지대 등이 있다.	자유무역 지대	FTZ (Foreign Trade Zone)
정부무역	정부기관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로서 실제의 실무는 민간무역업자가 대행함.	정부무역	Government Trade
정부조달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정치적 위험	해외시장에서 정변, 내란, 혁명 등의 비상위험으로서 수출보험에 의해서 보상됨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을 취하는 거래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직접무역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	직접무역	Direct Trade
최혜국 조항	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국의 한쪽이 제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	최혜국 조항	MFN(Most Favored Nation) Clause
최혜국대우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국가간의 협정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합작투자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정부기관이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방식	합작투자	J/V (Joint Venture)

## 2. 무역계약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문
가격조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래조건으로 무역가격조건이라고도 함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가격플러스 마이너스 조건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	가격증감 약관	Escalator Clause
가격표	생산물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표 표에는 가격의 종류, 생산원천 및 생산기업소명, 제품명, 가격번호, 규격과 규격번호, 인수도 조건, 가격을 정한 기관명과 그 시일 및 제정호수 등 내용을 넣음.	가격표	Price List
각서	정부 및 외무성 호상간, 외교대표부와 주재국사이 또는 외교대표부를 호상간에 교환되는 공식적인 외교문건	각서	Memorandum
개산수량 조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조건의 하나로써 상품수량에 관한 조건을 개략적으로 개산한 것	개산수량 조건	Approximate Quantity Term
검사증명서	수출입상품의 조건이 매매계약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건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견본	본보기로 되는 물건	견본	Sample; Specimen; Pattern
견본매매	상품견본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상품판매.	견본매매	Sale by Sample
가격산출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미리 어렵잡아 계산함. 또는 그런 계산.	견적	Quotation
종합계산서	경영자금과 그 운동을 종합계산자리에 의하여 기록계산하는 체계적계산의 기본형태. 분석계산에 대응함.	견적서	Price Estimate (=Price Quotation)
결제조건	무역거래에서 상품대금결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규정해놓은 조건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결제통화	(현대세계경제사전에 의하면 결제통화로 나와있음) 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에서 상품값을 치르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불거래에서 쓰이는 통화. 가격통화라고도 함	결제통화	Currency of Settlement
계약위반	서로 관계되는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로나 말로 한 약속 지키지 않는 행위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계약조건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함.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구성요인임	계약조건	Terms of Contract

계약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	계약해제	cancellation of contract
계약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	계약해지	termination of contract
공개입찰	부르조야 국가가 정부자금조달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입찰. 지명입찰에 대응되는 개념.	공개입찰	Open Bid
공장도조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자기의 공장 등의 구내에서 넘겨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됨.	공장도인도 조건	EXW (Ex Works)
수량허용 한도조건	화물의 정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적증량조건, 양륙증량조건인 어느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함.	과부족인용 조건	More or Less Clause
구두계약	말로 맺는 계약	구두계약	Verbal Contract
구매계약	물건을 사는 것을 계약함	수입계약 (구매계약)	
국경인도 조건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허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위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국경인도 조건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제규격에 준한 거래	생사나 면사포처럼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규격을 품질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며, 이러한 거래를 규격매매라 함.	국제규격 매매	Sale by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가간 사회적, 경제적 및 법률적 다양성을 고려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단일법규체이 국제 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을 명시한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유가증권	자본주의하에서 그 소유주에게 리익배당금 또는 리자의 형식으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거나 일정한 재산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증서	유가증권	Document of Title
규격매매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매매	규격매매	Sale by Type or Grade or Specification

도착조건	계약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도 도착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매매조건	도착조건	On Arrival Terms
독점 판매점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수출업자는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계약	독점 판매점	Sole Distributor / Exclusive Distributorship
독점대리권	대리점이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리점을 하나의 지역에 대해 하나의 회사에 한정하고 그 하나의 회사에 그 지역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경우의 독점적 대리권	독점대리권	Sole Agency
수출입계약(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수출입계약서	매매계약(서)	Contract of Sale
매수인 견본	수출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상품 샘플	매수인 견본	Buyer's Sample
구매계약서	구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작성함.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주문승낙서(매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보내 확인을 요구한다.	매입계약서	Purchase Note
매입오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정의 가격, 품질, 인도조건 등으로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신청을 말하고 Bid라고도 부름	매입오퍼	Buying Offer
무상견본	제조가공품의 품질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보내는 견본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무상견본이라 함.	무상견본	Free Sample (=Sample of No Value)
무역계약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며 약성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차기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됨	무역계약	Trade Contract
무역조건	수출품의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품의 량. 한 나라의 무역리익의 변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무역조건	Trade Terms
무역사고 청구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무역클레임	Trade Claim
반품허용 조건부오퍼	잡지나 서적을 다량으로 주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판매하고, 잔품을 오퍼발행자에게 반품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오퍼이며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 이용됨	반품허용 조건부오퍼	Offer on Sale or Return

보세창고 인도거래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	보세창고 인도거래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상선항조건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의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운송조건	본선인도 조건	FOB (Free On Board)
부두인도 조건	매도인이 수입항의 부두에서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격 조건	부두인도 조건	DEQ (Delivered Ex Quay)
불가항력	그 무엇으로도 당해 내거나 막아낼 수 없는 큰 힘,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면책됨	불가항력	Force Majeure
불착	보험상의 불착은 상자, 포대, 드럼통 등을 개수로 셀 수 있는 화물이 포장된 상태로 그 멸실원인이 불분명한채로 행방불명이 된 것이 도착항에서 판명된 것	불착	ND (Non-delivery = short-delivery )
산적화물/ 발하화물	곡물이나 광물 또는 목재처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는 화물	산화물 (散貨物)	Bulk Cargo
상사 분쟁	계약불이행, 인도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매매계약의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상사 분쟁	Commercial Dispute (=Trade Dispute)
적선	사람의 호적에 해당하는 선박의 적(籍).	선적	S/D (Shipping Date)
소송	민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	소송	Litigation
수량조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조건의 하나로써 상품수량에 관한 조건.	수량조건	Term of Quantity
수수료	(수속값) 수속하는데 드는 비용	수수료	Commission
판매계약	수출상품 판매를 구매자와 계약하는 것	수출계약	Contract of Export
수출수입 계약서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 매수인 양당사자가 서명한 문서.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고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함.	수출수입 계약서	Export/Import Contract Sheet
순톤수	등록 총 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조종실, 선용품창고 등의 선박의 운항용 스페이스를 공제한 것으로서 선적과 화물의 수용용적을 나타냄	순톤수	Net Tonnage
신고가격	세계무역기구에서 관세부과기준으로 리용하는 가격	신고가격	Declared Value

신용조사	대외거래에 앞서 상대방의 신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회사, 상사, 은행들이 진행하는 료해장악사업. 대외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로부터 주로 협정, 의정, 개별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에 대한 내방의 수행능력과 그 성실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	신용조사	Credit investigation
신용조회처	신용조회처에는 신용조사 전문기관, 상대방이 통지해 온 은행 또는 동업자, 자기의 거래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음	신용조회처	Credit Reference
쌍방계약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 청부, 고용 등은 모두 쌍방계약이고 이에 반대되는 것이 편무계약임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승낙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립됨	승낙	Acceptance
중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힘쓰는 일.	알선	Intermediation
의항서	기업을 합병 또는 매입할 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증권 발행회사 및 인수업자 사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서장. 법적구속은 없는 것이 원칙임	양해각서	Letter of Intent
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함.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을 수배해야 함	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제비용이 포함된 FCA조건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가산된 조건	운송비지급인도	CPT (Carriage Paid to)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관필 물품을 인도하는 것	운송인 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운임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약정품에 대한 운임을 지급하는 것	운임지급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CPT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도인이 운송중 약정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화보험을 수배하여야 함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선적항에서 본 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 및 해상운임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매도인이 CFR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수인의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을 매도인이 부보하여야 함.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함	운임포함조건	CFR (Cost and Freight)
원산지표시	화물의 확인도장 또는 상표에 그 상품의 생산이 진행된 나라의 이름을 밝히는 제도	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Mark
유사견본	상품의 견본은 본래 현물견본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생산되어 판매할 예정인 상품의 매매인 경우에는 아직 현물이 없으므로 그 상품의 동종동류의 물품에서 견본을 고르는데 이것을 유사견본이라 함.	유사견본	Similar Sample
리윤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리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되며 사회의 순소득의 한 부분을 이룸	이익	Margin
납입조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5조건(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하나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품의 수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시기에 대하여 약정해야 함	인도조건	Delivery Terms
인도지	화물의 인도지. 컨테이너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증권에 있어서는 당해 운송인의 운송구간의 중점을 표시하고 양륙항이나 최종목적지와 구별하여 표시됨	인도지	Place of Delivery
날인세 / 각인세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	인지세	Stamp Duties
인코텀즈(국제무역규정)	1936년 최초로 제정한 이래 계속적인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 등의 발달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개정되어옴.	인코텀즈	INCOTERMS
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방미터	CBM (Cubic Meter)
입찰보증금	입찰을 진행할 때 입찰참가자가 입찰조치자에게 입찰에서 당선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리행할 것을 담보하는 금액	입찰보증금	Bid Bond
적선지 인도조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중 FCA, CPT, CIP는 복합운송에 적합함	적출지 인도조건	Shipment Contract

적선 화물 명세서	적하명세목록에는 각 적하품의 품명, 수량, 용적, 하인, B/L번호, 송장번호, 송하인, 수하인 등 이외에 운임율, 부대비용, 운임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음.	적하명세 목록	Freight List
조건부 수락(인수)	원 오퍼(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오퍼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 반대로 피라고도 부름.	조건부 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조건부 제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 것을 의미. 조건부청약이 일반적으로 불확정청약인 것은 아니며 청약자가 부가한 조건의 성격에 따라 확정, 불확정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이 될 수도 있음.	조건부 청약	Conditional Offer
주문/구매제안(서)	주문하는 물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밝힌 문서	주문(서)	Order
주의표시	포장된 화물의 외장면에 그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작업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자	주의마크	Caution Mark
준거법	국제사법에서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하기로 지정한 법.	준거법	Governing Law
중요사항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중요사항	Material Circumstances
중재조항	무역거래조건에 협정서, 매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에 기재 또는 인쇄되어 있음.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의 약정.	중재약관	Arbitration Clause
중재인	중재에 있어서 중재판정을 내리는 사람	중재인	Arbitrator
중재지	실제로 중재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중재지	Place of Arbitration
중재판정	중재인이 중재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중재판정	Arbitral Award
증거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나 표적	증거	Witness
착선인도	물품이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착선인도	DES (Delivered Ex Ship)
천재지변	하늘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재난과 땅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사변이라는 뜻	천재지변	Act of God
제안 / 신청	어떤 일이나 물품을 해결해주거나 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청약	Offer
제안서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	청약서(물품 매도확약서)	Offer Sheet

최종선적일	계약의 선적기일이 5월 선적이면 신용장에는 not later than May 31으로 선적이 허용되는 최종일일 명시된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최종 선적일보다 7~10일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관례.	최종선적일	Latest Shipping Date
취급주의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주의마크의 하나이다.	취급주의	Handle with Care
배상청구 / 분쟁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어 양하되면 수입자는 계약서대로의 물품인가, 손상은 없는가 또는 화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손상, 멸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확인하고 화물의 인수전에 책임자에게 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함.	클레임	Claim
표준계약서	동업자단체 등이 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 표준적 내용을 모아 놓은 계약서	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표준중재 약관	무역클레임을 중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경우, 신속하게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나 거래협정서의 배면 등에 규정하는 인쇄된 중재약관을 말함	표준중재 약관	Standard Arbitration Clauses
하인	수입자가 도착항에서 통관이 용이하도록 포장에 기재된 표시.	하인	Shipping Marks
현장인도	화물의 소재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	현장인도	Loco
확정손해배상액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	확정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

### 3. 무역통관

복측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 문
관세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세	Tariff
무관세(특권)	관세율의 양보와 양허를 말함.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어 있음	관세양허	Concession of Tariff
관세장벽	관세경계선 내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톨의 세금이나 복잡한 통과 조건	관세장벽	Tariff Barrier
관세할당 제도	일정한 기간에 수입되는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할당된 수량까지는 낮은 세를 또는 면세를 적용하고 그것을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세율제도	관세할당 제도	Tariff Quota System

반송통관	반송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	반송통관	
반송품	적출된 화물에 대하여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지에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반송품	Returns
병행수입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특권을 확립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보복관세	자본주의나라들 사이에 서로 차별대우나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그에 보복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관세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보세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	보세	In Bond
보세창고	관세지불을 보류시킨 수입품을 넣어두는 창고	보세창고	BW (Bonded Warehouse)
보호관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해당한 생산부문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내상품과 경쟁하는 외국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보호관세	Protective Duties
부두직통관	주요항만에서 화주가 부두직반출(직통관 및 보세운송)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	부두직통관	부두직통관
비관세장벽	관세 이외의 수입장벽. 즉, 정부가 외국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정책적 제 수단	비관세장벽	NTB (Non-Tariff Barrier)
수입 세율표	관세세율에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단력 관세율, GATT협정관세율, GATT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및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이 있음	수입 세율표	Import Tariff
수입세	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세	Import Duties
수입신고서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입신고서임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수입신고자	수입신고할 물품을 수입한자	수입신고자	
수입승인서(문건)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됨.	수입신고필(증), 수입통관	I/P (Import Permit)
수입통과	수입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	수입통관	

세관수출 승인신청서	수출할 때 세관에 수출의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	수출신고서	Export Declaration
수출승인 문건	수출자의 수출신고에 따라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된 화물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됨.	수출신고 필증	E/P (Export Permit)
수출통과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	수출통관	Export Customs Clearance
이중관세	동일수입품에 대해서 2종의 세율을 정하는 것	이중관세	Dual Tariff
일반특례 관세제도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시키는 제도	일반특례 관세제도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상품목록	선적화물에 대한 명세서이며, 양륙지에서 하역상 필요한 서류이고 수입화물에 대해서 양륙지의 세관에 제출하는 중요서류.	적하목록	M/F (Cargo Manifest)
통과목록	무역화물운송중의 각 기항지에서 통과화물의 신고로서 제출하는 서류	통과목록	Through Manifest
통과세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통과세	Transit Duties
통관업자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자	통관업자	Customs Broker
특혜관세	어느 특정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히 낮은 세율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	특혜관세	Preferential Duties

#### 4. 무역운송

복합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문
20피트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 20, 40, 35, 45foot 등의 규격이 있다. 그 중에서 20foot 인 컨테이너임.	20피트 컨테이너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40피트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 20, 40, 35, 45foot 등의 규격이 있다. 그 중에서 40foot 인 컨테이너임.	40피트 컨테이너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

갑판짐	화물이 갑판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 등 선박위기사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재된 B/L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함.	갑판적	On Deck Shipment
개별운임율	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	개별운임율	Contract Rate
개품운송 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에 의하는 경우가 많음.	개품운송 계약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항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해야함.	개항	Open Port
항만기중기	문 또는 다리 모양의 항만용 크레인으로서 크롤러 크레인과 쓰인스가 비슷하지만 위부분의 구조가 약간 다름	갠트리 크레인	Gantry Crane
건화물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음	건화물	Dry Cargo
건화물 컨테이너	건화물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건화물 컨테이너	Dry Container
검량	선서검량인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검량하는 것.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됨	검량	Measuring
검수	물건의 수량, 규격, 품질 같은 것을 검사하여 받는것	검수	Tally
검수인	물건의 수량, 규격, 품질 같은 것을 검사하여 받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	검정인	Surveyor
지함(주름판 지지함)	주로 주름판지나 두꺼운 판지를 가지고 만든 종이함	골판지박스	Carton
국내 운송	집배송을 위한 주요 터미널과 하주에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국내수송	국내 운송	Local Carriage
국내 운임율	Local Point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국내 운임율	Local Rate
국내 화물	정기선의 시발항에서 최종항까지의 운송도중의 중간항 사이만을 수송하는 화물	국내 화물	Local Cargo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의 기구. 국제적인 민간항공의 발달과 안전 국제협력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운송주선인협회 연합회	1926년 3월 21일 설립, 스위스 주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음. 전세계적인 운송 주선인의 연합체.	국제운송주선인협회 연합회	FIATA
국제철도 물품운송조약	나라들사이의 철도수송기재의 원칙과 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규칙	국제철도 물품운송조약	CIM
국제항공 운송협회	세계 각국의 민간정기항공회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단체	국제항공 운송협회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균일운임	운임은 수송량과 수송거리로 산출되지만 비교적 단거리인 경우에는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균일운임을 부과함.	균일운임	Flat Rate
설비장비 영수증	컨테이너 기기의 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Container Terminal에 의해서 작성되어 기기의 CY반출, 반입할 때 하주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	기기수도증	Equipment Receipt
기명식 배집증권	짐반을 사람의 이름을 밝힌 배집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내륙수송비	선박회사가 하주의 의뢰로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을 한 경우에 하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내륙수송비	내륙수송비	Inland Haulage Charge
내장	외장과 대비되는 Packaging으로서 목상자나 가마니에 의한 외장에 대해 개개의 화물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매력력을 주기 위한 내부포장	내장	Inner Packing
내항능력	선박이 그 운항을 마지기 위하여 선체, 기관, 속구를 완비하고 필요한 승무원을 배치하고 충분한 연료, 식량, 물 등을 적재하여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할 만큼의 능력	내항능력	Seaworthiness
내항선	국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내항선	Coaster (=Coasting Vessel)
냉동조건	냉동어, 냉동육 등이 본선의 냉동고의 고장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	냉동약관	Refrigeration Clause
냉동컨테이너	냉동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냉동기를 부착한 컨테이너	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냉동된 어류, 육류, 과일 등으로서 선박의 냉동고에 적재되어 운송하는 화물. 특별운임을 지급함.	냉동화물	Refrigerated Cargo
노트	선박의 속력의 단위로 1 Knot는 1시간에 1해리(1.853km)를 달리는 속도	노트 (선박의 속도단위)	Knot
대량화물	물품 수송의 경우 몇 개를 모아서 1 lot를 만드는데, 1 lot가 몇 천톤 또는 몇 만톤이 되는 대량화물	대량화물	Lot Cargo

수로안내인	수로 안내인 즉 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선 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	도선사	Pilot
도착예정일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됨	도착예정일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항	해상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양륙항으로서 해상운송의 종점이고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하나이고 하인을 구성하는 요소임.	도착항	Port of Destination (=Port of discharge)
동맹운임표	해운동맹이 가맹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독점적 협정운임으로서 해운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동맹선에 적용되는 운임표	동맹운임표	Conference Tariff
만재화물	화물선에 만재된 화물을 말함. 만선이라고 부르기도 함.	만재화물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만재흡수선	선복의 중앙부에 있는 눈금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표시	만재흡수선	Load Line (Mark)
목적지	운송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지점. 목적지가 홍콩이면 목적항이 목적지와 일치하지만 수입자의 조제지가 중국 내이인 경우에는 화물은 목적항에서 양하되며 후속수송기관에 환적되어 내지까지 운송됨	목적지	Destination
깨끗한 배집증권	상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표시하는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없는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	Clean B/L
무역항	외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의 적재, 양하가 용인되는 개항(Open Port*)	무역항	Trade Port
복합운송	하나의 수송인에 의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수송수단들이 결합이용되면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운송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수송 대리업자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운송품이 수취된 장소에서 복합운송선하증권에 지정된 인도장소까지 전 운송의 이행을 책임을 일관해서 부담하게 됨.	복합운송인 / 포워더 / 운송주선인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CTO (Combined Transport Operator)
실림배집증권	짐을 배에 실은 것을 확인한 배집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On Board B/L
부두	바다가, 호수, 강기슭 같은데 배를 대고 사람이 오르내리며 짐을 싣고부릴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놓은 곳	부두	Wharf



부두사용료	부도업자 또는 부두소유자가 부두나 가치장의 사용료로서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부두사용료	Wharfrage
부선	항만내에서 짧은 거리의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동력을 갖고 있는 소형선	부선	Barge
배짐칸	정기선(Liner)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공간	선복	Freight Space
선복예약서	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증거로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서류	선복예약서	Booking Note
선장	배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지휘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선장	Master
적선	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적재, 발송, 수취, 우편수령일, 짐배일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그리고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한 선용장의 경우에는 수취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선적	Shipment
적선문건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 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s
실림배짐증권	B/L 우측상단의 당해 B/L 성격 설명란에 "shipped"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B/L은 물품의 본선적재를 확인한 Mate's Receipt를 근거로 하여 B/L을 작성한 것이며 이러한 B/L을 선적선하증권이라 함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On Board B/L)
적선요구서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선적요청서	S/R (Shipping Request = Shipping Application)
적선지시서	하주의 선적신청서에 따라 선사본사가 현품을 확인한 후, 자기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 선적지시서	선적지시서	S/O (Shipping Order = Shipping Instructions)
적선통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메일,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됨	선적통지	Shipping Advice (=Shipping Notice)
선주	선박의 소유자.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소유권을 운항하는 자와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소유권을 운항의 위탁, 임대차, 용선을 해주는 자가 있음.	선주	Ship Owner

선주책임	선주의 책임	선주책임	Shipowner's Liability
배짐증권	수송업자 또는 해운회사가 화물을 인수했거나 배에 실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권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화물수탁인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게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	송하인	Shipper (=Consignor)
받은배짐증권	지정된 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우선 입고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부두수취증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화물인수자	매매계약상에서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자. 즉 판매수탁자	수하인	Consignee
시베리아 횡단철도	러시아의 동과 서를 육로로 이어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Trans Siberian Railroad)
실제운송인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의 의뢰로 의거하여 자기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	실제운송인	Actual Carrier
약식 선하증권	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 부정기항로 이용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행	약식 선하증권	Short Form B/L
외항선	무역상품을 적재하고 직접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외항선	외항선	Sea-going Vessel
용선	선박을 리용하려는 자가 해상수송수단의 소유자인 선주에게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리용하는 것	용선	Charter
용선계약 배짐증권	B/L 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선계약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용선계약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용선계약	C/P (Charter Party)
용선료	정한 구간 또는 정한 기간에 짐을 나르기 위하여 배를 빌린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운송 봉사료금	용선료	Hire (=Freight Hire ; Charterage)
용선자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용선자	용선자	Charterer
용적톤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톤수	용적톤	M/T (Measurement Ton)
용적화물	용적에 따라서 운임이 계산되는 화물	용적화물	Measurement Cargo
운송	운송인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	운송	Carriage

운송서류	운송서류의 종류별로 기본적인 수리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각 운송서류가 관계하는 운송방법을 고려한 환적에 관한 규정을 설정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s
운송용구	해상보험신청서에 운송구간, 운송용구의 난이 있는데 특히 오지에서 부보하는 경우에 접속 내항선명 또는 이용하는 운송요구로서 Rail, Truck, Lighter(부선) 등을 기입	운송용구	Conveyance
수송업자	화물 또는 승객을 수송하는 개인 또는 회사(철도, 트럭, 항공, 선박회사)	운송인	Carrier
운임	수송봉사에 대하여 지불하는 요금	운임	Freight
운임선불	CIF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을 받을 때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	운임선불	Freight Prepaid
운임율	운임율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	운임율	Freight Rate
운임표시	Freight Basis*와 동의어이고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	운임표시	Rate Basis (=Freight Basis)
운임협정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에 가입하고 있는 각 회사가 통일운임율을 준수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협정	운임협정	Freight Agreement
운임후불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에 운임을 지급	운임후불	Freight Collect
위험화물	발화성,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 신체, 직접화물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	위험화물	Dangerous Cargo
위험화물수송규칙	위험화물의 수송에 있어 사전에 운송에 관련된 사항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화물의 수송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준	위험화물수송규칙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양도가능배집증권	선하증권중의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라 선하증권이 유통선하증권이 되고 또한 비유통선하증권이 되기도 한다. 수하인의 란에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s로 표시하는 지시인식의 경우는 유통선하증권이 됨	유통선하증권	Negotiable B/L
일반화물	특별한 하역취급이나 적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	일반화물	General Cargo
입고	창고업자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	입고	Warehousing
적재	화물을 본선의 갑판위 또는 선창 내에 내려놓는 것	적재	Loading (=On Board)
전용선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재료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전용선	전용선	Industrial Carrier ; Specialized Ship

정기선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증선시켜 정기간 해상운항할 수 있는 선박	정기기간용선계약	Time Charter
정기선	화물이 많은 적든 정기적으로 동일 정기항로를 취항하는 선박	정기선	Liner
정기선운송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	정기선운송	Liner Shipping
정박기간	하주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	정박기간	Lay Days (=Lay Time)
중량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음	중량톤	W/T (Weight Ton)
중량화물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	중량화물	Heavy Cargo (=Weight Cargo)
지시식 배집증권	지시인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직항 선하증권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직항 선하증권	Direct B/L
직항선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	직항선	Direct Ship
직항운송	운송도중 환적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운송	직항운송	Direct Transport
선박도착 통지(서)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앞 화물이 몇 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착선 통지(서)	Arrival Notice
화물도착 통지	지시식 선하증권에 있어서 선박회사가 착하 통지서를 보내는 상대방	착하통지처	Notify Party
창고보관료	창고업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보수로서 받는 일정요금	창고보관료	Storage
철도화물 운송장	육상운송업자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지정장소에서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	철도화물 운송장	Railway Bill of Lading
체선료	항해용선계약의 경우 하역 때문에 소정일수보다 장기선 선박이 정박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해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체선료	Demurrage
최저운임율	소량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	최저운임율	Minimum Freight Rate
최종목적지	양하항내 내려진 화물이 다시 오지의 화물인 도지로 보내지는 경우의 최종인도 장소	최종목적지	Final Destination

출항예정일	본선의 출발 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	출항예정일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컨테이너 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울 때에 시봉하는 금속 재 봉인으로서 여기에는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붙어있다. 이 봉인상태에 의하여 도난, 발하 등의 부정행위의 유무, 화물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음	컨테이너 실	Container Seal
컨테이너 야드	선사가 컨테이너를 집적, 보관, 장치하고 적입컨테이너를 수도하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	컨테이너 야드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운송의 경우에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Container Terminal
컨테이너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 부분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 해,공로 상의 세가지 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수송도구	컨테이너	Container
컨테이너선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고속대형화물선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탱크 컨테이너	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터미널 비용	항만에서의 하역화물의 handling비용을 말함.	터미널 비용	Terminal Charge
통풍 컨테이너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	통풍 컨테이너	Ventilated Container
포장단위	포장단위에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다. 개장에는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등이 표시. 내장 및 외장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열연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할 것인가 계약시 정해야 함.	포장단위	Packing Unit
품목별 운임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만재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율로서 상품류별로 컨테이너 1개당 얼마로 정함.	품목별 운임	Commodity Box Rate
하역	화물수송 과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 옮기는 일, 창고에 쌓고 꺼내는 일, 기타 화물의 이동에 관한 일체의 현장처리작업	하역	Cargo Handling
하역업자	하역을 담당하는 사람	하역업자	Stevedore

추가금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 이외의 항에 기항하여 하역한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금	할증금	Additional Charge (=Surcharge)
추가운임	화약, 독극물 등의 위험물, 30피트 이상의 장척물, 한 개의 중량이 3톤 이상의 초중량화물 등에 대해서 청구되는 운임의 할증	할증운임	Additional Freight (=Additional Surcharge)
항(港)	선박이 도착하여 화물이나 승객을 내리거나 적재하거나 환적하는 장소	항(港)	Port
항공운송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	항공운송	Air Transportation
항공화물	여객항공기(All-traffic Services) 또는 화물전용기 (All-freight Services; Air Freighter)로 운송되는 화물	항공화물	Air Cargo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화물의 수취증으로서 항공회사 또는 항공대리점이 발행함	항공화물운송장	Airway Bill
항만사용료	수입화물 등에 부과되는 항만사용료	항만사용료	Port Dues
항비	선박의 입출항 및 계류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	항비	Port Charge
항세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통과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화물에 부과되고 징수되는 세금	항세	Port Rates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Policy of Marine Insurance)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 위험의 시기와 중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	해상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
해상운송계약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해상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의 증거, 즉 화물 수취의 증거로서 발행되지만 유가증권은 아님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해양선하증권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의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생하는 선하증권	해양선하증권	Ocean B/L
해운거래소	선주, 하주, 중개인 등의 해운관계자 등이 일정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선박수급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소	해운거래소	Shipping Exchange

해운동맹 (=운임동맹)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해운회사가 해당 경쟁을 회피하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결성하는 일종의 카르텔을 해운동맹이라 함.	해운동맹 (=운임동맹)	Freight Conference (=Shipping Conference)
화물인도지시서	선주 또는 그 대행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	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
환적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함	환적	Transhipment

## 5. 무역보험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 문
개별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	개별보험증권	Special Policy
신고의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	고지의무	Duty of Declaration
공동보험	여러 보험기관들이 하나의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을 함께 담보하며 그로부터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보상하는 직접보험의 한 형태	공동보험	Co-Insurance
공동해손	항해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손해	공동해손	G.A. (General Average)
나포	사람이나 배, 비행기 같은 것을 사로잡는것	나포	Seizure
누손	기름, 포도주 등의 액체성 화물용기의 틀 속에서 새어나온 손해	누손	Leakage
단독비용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것을 말함	단독비용	Particular Charges
단독해손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상손해	단독해손	PA (Particular Average)
담보	어떤 목적이나 지향의 실현을 어김없도록 보장하는것	담보	Warranty / Security
담보위험	일반 수출자 보험은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해야 함.	담보위험	Risks Covered
로이즈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단체가 발행하는 보험증권	로이즈	Lloyd's
책임면제조항	보험자가 범률상 부담하여야 할 책임가운데서 일부를 특별히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것을 밝힌 계약조항	면책조항	Escape Clause

보험상품금액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전적가액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때 있어서의 가액을 말함	보험가액	Insured Value (=Insurable Value)
보험금액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에 든 금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기간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르는 보험금지불의무를 지는 기간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보험료	보험기관이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돈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사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기관들이 담보하게 되어있는 보험위험이 현실로 전환된 사고	보험사고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보험신청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보험신청서에는 송장번호, 피보험자명, 보험금지급지, 보험조건, 부가조건, 적재선, 적재항, 출항일자 등이 기재됨	보험신청서	Insurance Application
보험조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기관이 책임지는 위험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	보험약관	Insurance Clauses or Conditions
보험업자	보험사업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기관	보험업자	Underwriter
보험요율	보험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백분율	보험요율	Insurance Rate
보험자	보험사업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기관	보험자	Assurer (=Insurer; Underwriter)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며 계약의무를 이행할 때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서	보험조건	Conditions of Insurance
보험중개인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매개하는 사람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보험증명서	수출업체가 매 수출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기간의 보험가입 예상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증권과 구별하여 보험증명서라 함.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추가위험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의 특수위험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분손	보험이 부분된 화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손	Partial Loss
분손담보	해상보험에서 보상범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분손을 제한없이 보상하는 것	분손담보	WA(With Average)

분손부담보	해상보험의 보상조건인 하나로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부분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	분손부담보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선박보험	선체 또는 선박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선박보험	Hull Insurance
선박보험증권	선박보험(Hull Insurance)을 체결한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	선박보험증권	Hull Policy
선장 및 선원의 약행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부정한 처분을 하는 것	선장 및 선원의 약행	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소손해 면책율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 방식	소손해 면책율	Excess (=Excess Franchise)
손상	무역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확인하여 구상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의 손상 또는 부족에 대한 책임에는 선박회사의 부담과 보험회사의 부담이 있음	손상	Damage
손실	해상보험에서는 해상위험에 의해 멸실·손상이 발생하여 피보험이익을 소멸·감소시키는 것	손실	Loss
손해방지 비용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 비용	Sue and Labour Charges
손해보상의 범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손해보상의 범위	손해보상의 범위	Scope of Cover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현실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손해보험	Property Insurance
손해율	받은 총보험료에 대한 지출된 보상금의 비율	손해율	Loss Ratio
손해의 보상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손해의 보상	Indemnification
손해통지 약관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	손해통지 약관	Claim Notice Clause
악의적 손해	노동쟁의 가담자 등이 고의로 피보험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	악의적 손해	Malicious Damage
열손	항천 중 장기간 선장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적하품에 열손을 발생시킨다. 열손은 해상보험조건인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	열손	Heating

예상 이익	수입화물이 무사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화물의 전매 등에 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을 예상이익이라 함	예상 이익	Anticipated Profit
예정보험	보험계약신청서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미리 다 타산할수 없는 경우 보험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관에 통지해줄 것을 전제로 하여 대략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	예정보험	Provisional Insurance
예정보험 통지확인서	수입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	예정보험 통지확인서	Certificate of Declaration (=Declaration Certificate)
오염	화물이 다른 물품과의 접촉 또는 혼입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	오염	Contamination
오염손해	악천후에 의한 해수의 침수로 인해 화물이 부패한 결과 또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로 발생한 침출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시킨 손해	오염손해	Taint Damage
우발적 사고	사고가 발생할지가 불분명하고 발생하여도 그 시기가 손해의 정도가 불확정한 사고를 말함	우발적 사고	Fortuitous Accident
운송보험	육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	운송보험	Transport Insurance
운임보험	운임후불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됨	운임보험	Freight Insurance
원보험증권	재보험의 기초를 이루는 보험	원보험증권	Original Policy
위험	무역 및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됨.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상의 위험, 시가변동상의 위험, 환율변동상의 위험 등의 상업위험, 상대방에 있어서의 정변, 내란 등의 비상위험, 상대방의 도산 등의 비상업적 위험이 있음	위험	Risk
위험개시	해상보험상의 위험개시시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의해서 정해짐	위험개시	Risk Attachment
위험의 이전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때 수출장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

유손(濡損)	창고나 부선에 보관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부족에 의한 발한, 하역, 운송중의 조유 등에 의한 손해	유손(濡損)	Wet Damage
유손화물	젖어서 훼손된 화물, 폭풍우, 풍랑 등으로 젖어서 망가진 화물	유손화물	Wet Cargo
일방과실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다.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 됨.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 가능	일방과실	One to blame
일부보험	보험가격보다 낮은 보험금액으로 설립된 보험	일부보험	Under Insurance
재보험	한 보험기관이 받은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기관에 다시 보험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	재보험	Reinsurance
화물보험	해상보험의 대상은 선박 및 화물이지만 전자의 보험을 선박(해상)보험이라 하고 후자를 적하(해상)보험이라고 함.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격과 동일한 손해보험	전부보험	Full Insurance
전손	보험대상전체가 현물적으로나 가치상으로 완전히 없어졌거나 못쓰게 된 결과에 발생한 손해	전손	Total Loss
전손 및 구조비담보	전손만 담보하고 공동해손,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지만, 구조비는 보상함. 이 경우에 구조비는 선박이 해난사고에 조우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또는 선박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운항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구조자에 대한 보수	전손 및 구조비담보	FAA S/C
전손담보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여 보험대상이 없어졌거나 완전히 못쓰게 된 손해를 보험기관이 보상하는 조건	전손담보	TLO (Total Loss Only)
전위험담보	이 조건은 A/R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WA 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항해의 지연이나 부보화물의 고유한 성질 및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함	전위험담보	A/R (All Risks)

전쟁/파업, 폭동, 소요위험	동맹과업, 소요자, 폭동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약관	전쟁/파업, 폭동, 소요위험	W/SRCC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otions)
전쟁위험	일반표준용선계약서(젠콘)에 포함되어있는 한 조항으로서 전쟁과 같은 위험발생에 의하여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만든 조항	전쟁위험	Ware Risks
좌초	짐물, 화재, 충돌과 함께 SSBC라고 불리워지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항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 다만, 운하 항행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됨	좌초	Stranding
지연손해	지연은 출항의 지연 및 항해의 지연, 적재 및 양하작업의 지연을 뜻함	지연손해	Delay Damage
책임보험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협정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그 초과액은 무효	초과보험	Over Insurance
최저보험료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 1건당 최저보험료	최저보험료	Minimum premium
추가(할증)보험료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	추가(할증)보험료	Extraneous Premium
추정전손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準)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충돌	좌초, 짐물, 화재와 함께 SSBC라고 불리워지는 주요사고의 하나로서 선박간의 충돌을 뜻함	충돌	Running-down (=Collision)
특별비용	보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전을 위해서 기항 또는 피난을 한 중간항에서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 이외의 것	특별비용	Special Charges
파손	유리제품이나 도자기 등이 항해 그자체는 무사하게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중에 발생한 파손. 보험회사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함.	파손	Breakage
폭동	일반민중이 다수 집합하여 일으킨 폭동. 국권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내란이나 반란과 지방적 소요와의 중간적 단계를 말함	폭동	Civil Comotions
폭풍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하나이고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의한 선적지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폭풍	Tempest

표도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열거위험의 하나로서 해상을 표박(漂泊), 배회하여 상선을 습격하여 적하품을 약탈하는 것	표도	Rovers
피보험자	피보험리익의 담당자로서 보험대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관으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	피보험자	Assured (=Insured)
추가보험료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	할증보험료	Additional Premium
항공운송보험	비행기에 직접 미치는 위험이나 비행기수송과 관련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항공운송보험	Aviation Cargo Insurance
해난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화재,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항로, 항해의 변경 등 항해 중 또는 항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품의 사고	해난	Marine Perils
해난보고서	항해도중 중대한 해난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선장이 처음 기항하는 도착항의 항만 당국에 발항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개요를 보고하는 서류	해난보고서	Master's Protest
해난증명서	해난이 발생한 경우 선장이 제출하는 해난보고서에 도착지의 감독관청이 항해일지 등을 참고를 하여 해난의 사실을 인증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것	해난증명서	Certified Copy of Master's Protest
해사감정인	화물의 손해정도 및 원인을 검사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그 손해사정대리인이 지정	해사감정인	Marine Surveyor
해상고유의 위험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사고 또는 재해로서 이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됨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해상보험	선박 또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항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하여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계약	해상수송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맺는 계약	해상보험계약	Marine Insurance Contract
해상보험법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	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
해상손해	해상에서 배와 수송화물이 위험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	해상손해	Marine Loss
해상위험	배의 항해에 동반되는 위험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상보험이 그 보상을 담보하는 위험	해상위험	Maritime Perils
해손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해손	Average

해적행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 국가의 재화만을 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에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폭행, 약탈하는 행위	해적행위	Piracy (=Pirates)
현실전손	화물이 현실로 전손된 경우 또는 그 점유가 박탈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전손(=절대전손)	Actual Total Loss(=Absolute Total Loss)
협정전손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	협정전손	Compromised Total Loss
협회도난, 발하, 불착약관	보험상의 Non-delivery는 상자, 포대, 드럼통 등을 개수로 셀수 있는 화물을 포장된 상태로 그 멸실원인이 불분명한채로 행방불명이 된 것이 도착항에서 판명된 것을 말함.	협회도난, 발하, 불착약관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
확정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신청서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데 기초하여 한번에 계약을 맺는 보험	확정보험	Definite Insurance

## 6. 무역결제

북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문
개설은행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개설은행	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됨.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전매선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됨.	개설의뢰인	Applicant
맞신용장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	견질 신용장	Back to Back L/C

결제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이라고도 함	결제은행	Settling Bank
고정환율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내에 한정하는 제도.	고정환율	Fixed Rate
공급자 신용	수출자 자신이 수입자에게 연말로 신용을 제공하는 것	공급자 신용	shipper's usance
기탁신용장	두 나라 사이의 무역균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연계무역방식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	기탁신용장	Escrow L/C
기한	금융상에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	기한	Tenor
기한부 신용장	기한부환자수형의 발행을 요구하는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
기한부수형	일람지불수형이외의 수형으로서 지불기일이 일정한 범위로 정해져있는 수형	기한부어음	Usance Bill
내국신용장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건질로 하여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	내국신용장	Local Credit
단순 신용장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서류매입을 취급하는 경우	단순 신용장	Simple Credit
동시개설 신용장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품이 금액상으로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접수한 측에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같이 개설하여야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조건이 붙은 신용장	동시개설 신용장	Back-to-Back L/C
동시지급 방식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서류(B/L 등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	동시지급 방식	Concurrent Payment
만기일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환어음대금 지급기일, 채권상환일,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등	만기일	Date of Maturity
매입은행	매도인인 수입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적출을 하고 신용장조건과 합치되게 발행한 환어음, 선적서류를 신용장과 함께 통지은행 또는 기타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이러한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발행인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환어음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의 발행인	발행인	Drawer
담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그 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	보증	Guarantee

보증신용장	금융기관이 수출입업자들을 비롯한 무역계약 당사자들의 신용을 담보하는 증빙문건	보증신용장	Stand-by Credit
담보서	해외건설공사를 청부할 때 제출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장	보증장	Security Bond
상환	입출금을 상환한다는 뜻이다. 신용장거래의 경우에 발행은행이 수출지의 매입은행의 매입자금을 상환한다는 것	상환	Reimbursement
호상계산	매매 양당상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해서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결제방법	상호계산	Open Account
상환신용장	신용장의 통화가 수출, 수입 양국의 화폐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이거나 수출지에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은행이 없을 경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지칭하는 특정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대금결제를 받게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신용장	상환신용장	Reimbursement L/C
상환수형	수출지의 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과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에 직송함과 동시에 발행은행 또는 신용장에서 지칭된 환기래은행에 매입대금의 구성을 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Clean Bill을 말함	상환어음	Reimbursement Draft
상환청구권 있는 신용장	판매자거래은행이 구매자의 지불거절로 수형 구입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때 판매자에게 그 대금의 상환을 요구할 것을 지칭한 신용장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	With Recourse L/C
상환청구권	수형의 소유자가 수형지불인에게 수형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상환청구권	Right of Recourse
수형	일정한 금액을 제정된 기일안에 무조건 지불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서명한 일정한 형식의 법적유가증권	서명	Signature
선불	계약품을 인도하기 전 또는 계약하자마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대금을 입수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방법	선불 / 선지급	Cash in Advance / Advanced Payment
송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관, 기업소 및 개인들 사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돈을 보내고 받는 거래	송금	Remittance
송장금액	송장에는 수출품의 수량, 단가, 총액 등이 기재된다. 이 총액이 송장금액이고, 이 금액이 매수인에 대한 청구금액이고 또한 환어음의 금액, 보험가액, 판매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송장금액	Invoice Amount



수익금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환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	수익금	Proceeds
수익인	경제적거래과정에 이루어지는 리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혹은 기관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	구매자의 지불을 담보하여 발행한 은행보증 문건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개설 수수료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율은 일반재 수입 시 매 3개월마다 0.17%~0.18% 사이에서 각 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른다. 수출용 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방위산업용 시설제 및 의회회특용 원자재 수입시는 매 3개월마다 0.1%로 한다.	신용장개설 수수료	Opening Charge
신용장의 변경	신용장의 원인이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신용장도 매매계약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 취소되거나 조건변경이 되어야 함.	신용장의 변경	Amendment to the credit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신용장의 양도	Transfer of Credit
신용장조건 불일치	Discre 라고 약칭한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상위)한 것	신용장조건 불일치	Discrepancy
신용장통일 규칙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의 해석, 취급, 관습 및 신용장의 형식 등에 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가 각국 은행협회의 대표로 구성된 「상업환신용장은행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1933년 제정한 민간단체의 규칙	신용장통일 규칙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약속수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수형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수형기간	일부후정기불과 같은 어음의 기간	어음기간	Usance
외환	다른 나라의 화폐 또는 화폐자금	외환	Foreign Exchange
유효기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 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	유효기일	Expiry Date
이자조항	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이 자행에 보내을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	이자조항	Interest Clause

이행보증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Performance Guarantee)
인수신용장	이 신용장은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 기관)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유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Usance L/C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함.	인수신용장	Acceptance L/C
인수은행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 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	인수은행	Accepting Bank
인수도조건	선적서류의 인도가 수입자의 어음인수와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조건	인수인도조건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일람불수형	수형소유자가 지불인에게 수형을 제시하는 날이 만기로 되는 수형	일람불어음	Demand Draft
조건부 신용장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반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 신용장	Conditional L/C
지불은행	상품 및 봉사 거래에 기초하여 작성제출된 대금청구문건의 금액을 지불하는 은행	지급은행	Paying Bank
지불인	어음의 To~ 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자	지급인	Drawee
지불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어음지급인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지불지시서	송금환의 일종으로서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은행에 지시하는 것	지급지시서	Payment Order
청산계정	2국간 협정무역에서의 결제방법의 하나로써 협정체결국들이 호상 대방은행앞으로 개설한 무현금결제계정	청산계정	Open Account
취소불가능 신용장	신용장개설은행이 이미 개설한 신용장의 조건들을 유효기간안에는 수익인과의 사전협의 없이 아무 때나 수정 또는 취소할수 있는 신용장	취소불능 신용장	Irrevocable Credit

통지은행	신용장발행은행의 의뢰에 의하여 수익인에게 신용장이 발행된대 대하여 통지하는 은행	통지은행	Advising Bank
결합 있는 서류 접수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서류에 어떤 신용장조건불일치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어음의 매입의뢰인과의 거래관계나 조건불일치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보증을 정수하고 매입을 함.	하자 있는 운송서류의 매입	L/G Nego
할부신용장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 바 수출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	할부신용장	Instalment L/C
확인신용장	개설은행의 의뢰를 받아 다른 은행이 확인한 신용장	확인신용장	Confirmed Credit
확인은행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환율	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즉 2국간의 통화가치의 비율	환율	Rate of Foreign Exchange
회전신용장	일정한 기간 신용장금액을 자동적으로 갱신하면서 여러번 리용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	Revolving L/C
후불	계약대금의 지급을 상품인도 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 즉, 상품의 선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되는 대금결제방법	후지급	Deferred Payment

## 7. 기 타

복한용어	용어해석	남한용어	영 문
분석증명서	화학약품이나 평산물 등의 함유성분을 전문 검사기관이 증명한 증명서로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적서류의 일종으로서 화환 어음에 첨부해야 함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상업송장	매매계약조건을 정확히 리행한 것을 기록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보내는 서류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상품거래소	품질이 비교적 균등하고 대량거래에 적합하며, 또한 상당히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	상품거래소	Mercantile Exchange
세관송장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국의 세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특별히 발행하는 송장	세관송장	Customs Invoice

영사송장	수입시 관세등을 포탈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정한 송장을 작성할 우려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을 통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용적증량 증명서	상업송장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증량의 명세서.	용적증량 증명서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
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거래되는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가를 증명하는 문건	원산지 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일반특혜 관세제도 원산지 증명서	UNCTAD에서 1970년대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됨.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시키는 제도이며, GSP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일반특혜 관세제도 원산지 증명서	GSPC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전람회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KOEX등)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	전시회	Trade Fair
창구 검사	해사검정인이 행하는 선창의 검사로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Hatch를 열은 직후에 창구의 검사, 해수, 우수 침입의 유무, 화물적부의 적부, 화물의 손해의 유무 및 그 원인, 항해일지의 점검이나 사정의 청취 등을 행함	창구 검사	Hatch Survey
창구검사 보고서	해사검정인이 창구의 방수처리외의 검사, 적부방법의 적부, 창내에의 해수침입경로, 한류의 발생의 상황 등을 실시 조사한 보고서	창구검사 보고서	Hatch Survey Report
판매구역	미국대륙에서 공통운임을 과징하는 지역	판매구역	Territory
포장명세서	포장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를 포장명세서라 함.	포장명세서	P/L(Packing List)
포장비	생산물을 포장하는데 지출된 비용	포장비	Packing Charge
포장형태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됨.	포장형태	Style of Packing

포장화물	마부대에 넣어 전기프레스로 압축한 Baled Cargo나 목상자로 포장된(Case Packing)화물	포장화물	Packed Cargo
품질 마크	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선적화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마크	품질 마크	Quality Mark
품질관리	Quality Control의 약자로서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	품질관리	QC (Quality Control)
품질증명서	판매자가 보낸 상품의 질이 매매계약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품질증명서	Certificate of Quality
해외직접 투자	국제간 장기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 자본, 기술 및 인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해외직접 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8. 평가와 문제점

### □ 북한 무역실무 용어의 특징

- 북한은 대외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무역용어의 수(數)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통용되는 무역용어도 부족함.
- 북한의 무역실무 용어들은 남한의 영어 또는 한자식 표현과는 달리 우리 말을 활용하여 ‘풀어쓰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남한의 무역실무 용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면에 북한의 무역용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임.
- 결국, 남북한 간 무역용어의 차이는 기본적인 일상어의 차이가 무역용어에도 동일하게 존재는 정도로 평가됨.

### □ 남북한 무역용어의 수(數)는 남북한 간 무역발전의 정도 및 자료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양측 사이에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오랜 자금경제체제로 인하여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무역용어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외부에 공개된 무역관련 자료도 거의 없음.
- 북한에서 사용하는 무역서식 등은 대부분 남한 기업인과의 거래에서 활용

되었던 자료로서 남측의 서식과 대체로 유사함.

- 북한과 거래하려는 대부분의 사업자(한국 또는 제3국)들은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서식을 제공하고 북측의 검토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 기본적인 국제무역규칙과 무역용어는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의 무역업자(무역일꾼)들도 국제상관습으로 정착되어 있는 국제무역규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 북한 무역업자들도 대외거래를 위하여 UCP, INCOTERMS등 국제규칙을 잘 알고 있으며, L/C, FOB 등의 영어식 무역용어 표현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와 같이 남북한 무역실무 용어는 실제 활용에 있어 전혀 다른 용어나 동일한 용어라도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 우선, 남한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무역실무 용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북한의 ‘방조’는 남한의 ‘협력’을 의미함.
  - o 남한에서 방조는 부정적인 의미인 반면에 북한의 방조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됨
- 북한의 ‘중개’는 남한의 ‘알선(Intermediation)’을 의미하기도 함.
  - o 남한에서는 중개와 알선의 개념은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음.
- 북한의 ‘무관세(특권)’는 남한의 ‘관세양허’를 의미함.

### □ 북한에만 있는 용어로 남한에서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 북한의 ‘수형’은 남한의 ‘어음’ 또는 ‘서명’을 의미

- 북한의 '행표'는 남한의 '수표'를 의미
- 북한의 '러행행표'는 남한의 '여행자수표'를 의미
- 북한의 '류동고'는 남한의 '계좌'를 의미
- 북한의 '날인세' 또는 '각인세'는 남한의 '인지세'를 의미함

□ 한편, 북한에만 있는 용어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

- 북한의 '배집증권'은 남한의 '선하증권'을 의미
- 북한의 '맛바꿈무역'은 남한의 '구상무역'을 의미
- 북한의 '맞수입'은 남한의 '대응구매'를 의미
- 북한의 '돈자리'는 남한의 '계좌'를 의미
- 북한의 '비무역거래'는 남한의 '무역외거래'를 의미
- 북한의 '현금환자시세'는 남한의 '환율'을 의미
- 북한의 '규약'은 남한의 '정관'을 의미
- 북한의 '거래수익금거래세'는 남한의 '부가가치세'를 의미
- 북한의 '공업도안권'은 남한의 '디자인권'을 의미

□ 북한 특유의 풀어쓰는 무역용어

- 북한의 '무역의 다각화'는 남한의 '다각무역'을 의미

- 북한의 '계획적인 행동'은 남한의 '담합행위'를 의미
- 북한의 '가격산출(서)'는 남한의 '견적(서)'를 의미
- 북한의 '무역사고청구'는 남한의 '무역클레임'을 의미
- 북한의 '지함(주름판지지함)'은 남한의 '골판지박스'를 의미
- 북한의 '실림 배집증권'은 남한의 '선적선하증권'을 의미

□ 외래어를 실무에서 받아들여 사용하는 용어

- 북한의 '가격플러스마이너스조건'은 남한의 '가격증감약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영어식 표현은 실무현장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판단됨.

□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남북경협 과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나 관련 북한법률의 해석에 있어 무역용어의 신중한 사용이 필요함.

- 무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되는 경향이 크며, 이러한 용어들이 법률에 사용될 때 공식적인 용어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 남북한 간 통일된 무역용어를 위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 및 법률의 제·개정 시 통일된 용어사용을 위한 노력과 합의가 필요함.

- 무역은 국제거래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통일무역용어로 사용되어야 함.

- o 남한의 무역용어는 상당부분 국제표준과 일치되며, 국제표준 용어 활용으로 남한의 무역용어가 남북거래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

□ 무역거래자 입장에서 북한과의 무역업무 수행 및 계약체결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에 직결되므로 남북간 의사 불일치로 인한 손해 및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용어관련 합의가 필요함.

- 계약서 한 조항으로 용어정의 및 불일치의 경우 준거법·규칙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간 무역용어 사용 시 주요 용어에 대한 영어병기가 필요하고, 당사자간 불일치의 경우 국제규칙에 따라서 해석됨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5장 남북한 무역용어의 표준안 수립방안 및 정책과제

### 1. 법적 제도적 과제

- 현재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교역 및 투자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는 비교적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기본적인 기초는 마련된 상황임.
- 하지만, 아직도 남북교역을 지속적이고 급속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한간 교역의 지속적인 증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교역환경을 급격히 바꾸어 야 하는 바,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남북한간 무역용어 통일을 이루어 내어 의사소통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용어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제도수립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함.
- 남북한은 독립적 실체이면서도 통일을 지행해 나가는 특수한 관계에 있음.
- 특수한 관계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임.
- 첫째, 남북한 사이의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o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한간 협상이나 쌍무적 분쟁시에 제시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은 통일의지와 민족내부거래의 의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과로도 작용 할 수가 있음.
- 둘째, 남북한 무역용어통일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연구 및 법률초안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o 정부내에 T/F를 만들거나 법률 학자그룹을 만들어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 및 법률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법률초안을 먼저 만들고 국내외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국제기구

들에도 사전 교감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함.

- 셋째, 남북한 교역이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에 맞게 용어 통일을 지향하되 우선 법률에서 제정한 법적 정신에 맞게 교역관련 하위규정들을 대폭 손질해야 함.
- 넷째, 먼저 수정을 추진하고 남북교역이 활성화 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지속적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은 남북한 사이의 거래를 증가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교역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과 규정들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간 상충되는 규정부문들을 조정하며 간소화 할 것은 간소화 하고 철폐할 수 있는 것은 대담하게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함.
- 여섯째, 우리가 먼저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에 관한 법률초안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유도해 내며 공식적인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협정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함.
  - o 무역용어 통일의 개념과 형태, 방식과 내용, 결과의 긍정성 등을 만들어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북한도 자체의 안을 만들도록 유도.
  - o 남북한의 무역용어 통일안이 만들어 지는 시점에서 정식 협상을 전개하며 합리적인 자유무역합의를 이끌어 내야함.
  - o 이를 위해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 법률전담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함.

## 2. 정부차원의 과제

- 각종 남북회담과 국제회의에서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적극적 노력 경주.
- 첫째, 모든 남북회담에서 용어통일을 위한 문제제기를 하고 합의된 용어 만이라도 최우선 사용하는 관행을 정착
  - o 통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남북관계 관련 정부기구들에서 각종 남북회담 시 무역용어 통일과 사용 확대에 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합의되었거나 통용되는 통일단어를 사용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

가야 함.

- 둘째, 남북경협현의 현장에서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성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용어 불일치로 인한 남북교역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논쟁하며 대세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함.
  - o 각종 세미나를 조직하거나 로비를 전개하여 다른 나라사람이나 국가, 혹은 국제기구 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돕는 분위기 조성.
- 셋째, 통일부나 지식경제부 내에 지금부터 전문 담당관을 임명하고 광범위한 사전조사와 대안 연구를 하며 해외에서 조사와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찾아 내서는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o 국제통상법률 전문가, 북한 전문가, 외교관 등이 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사안별로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넷째, 각국 주재, 외교공관, 국제기구들에서 북한 공관이나 기구들과의 협상체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도 무역용어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o 일단 각국 주재 외교공관들에서 주재국이 남북한의 대외무역용어의 통일을 위한 실득작업 전개
  - o 북한 외교공관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그들과 공동협의를 대안 모색도 해야 함.
- 다섯째, 남북한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용어 통일을 위한 가칭 '남북한 무역용어통일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o 서울이나 평양에 연구소를 창설운영해도 좋고 단기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남북이 합의하는 조건에서 제3국에 연구소를 창설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o 초기 설립자금은 지식경제부나 무역협회에서 지원하고 연구 인력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보장하며 기관운영은 2년 혹은 3년에 한번 씩 남북이 순번제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임.
- 여섯째,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추진과 함께 용어통일을 위한 연구와 통합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나가야 함.

- 현재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연구나 협상을 위한 재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분쟁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분쟁의 원인을 축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언어의 이질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해와 분쟁이 많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용어통일을 위한 연구와 관련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늘려야 함.
- 정부의 재원확대와 함께 이를 직접 관리하고 기획하는 담당주체를 무역협회로 일원화하고 무역협회와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화해야 함.

### 3. 기업차원의 과제

- 첫째, 무역용어 통일의 요구자도 기업이고 수혜자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무역용어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기업은 남북경제협력의 실질적 담당자이며 대북 교역기업은 현장의 애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에 대해 이해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은 무역용어 통일에 관한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용어통일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의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기업 자신도 몰심양면으로 용어통일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함.
- 둘째, 기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대국회 및 대정부 설득 노력을 해야 함.
  - 국내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상담회/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실상과 애로를 알리고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함.
- 셋째, 북한당국과 무역기관 및 회사를 상대로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설득과 협상을 추진해야 함.

- 무역용어 통일은 남한만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동의 이익이 걸린 사업이며 북한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북한도 과거 남북 언어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협상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무역용어 통일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임.
- 특히, 대북진출 기업들은 북한 현지생산기업에 북한 관료와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무역용어 통일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역을 하는 현장의 기업들은 정부의 통일용어 관련 법률제정 및 연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자료와 정보, 애로사항과 사례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연구의 내실과 현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무역협회가 주도하여 대북교역 관련단체들이 남북한간 각종 세미나, 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분위기를 만들고 실천과제들을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관련 법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해야 함.
  - 특히 무역협회는 남북한 전문가들로 공동 연구그룹을 만들고 재정적으로, 정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 다섯째, 기업들에서 북한의 무역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단통에 있는 '하나비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면 언어의 이질성에 대한 현실 파악이 깊고 빨라질 수 있으며 대처능력도 증대될 수 있음.
  -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인력을 공급받아 쓰면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무역관련 용어차이나 교역체제상의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여 나갈 수 있으며 교역상의 분쟁가능성도 줄어나갈 수 있을 것임.
- 여섯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무역협회가 주도하고 우리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남과 북의 무역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남북교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면서 무역관련 정보교환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용어 연구나 통일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정부나 무역협회가 기획 및 재정을 지원하고 대북교역업체들이 협상하여 남북한의 교역업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남북교역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음.
  - 남북한이 당장 서울이나 평양에 설립하기 어려우면 베이징이나 심양 및 단둥에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이 센터는 남과 북의 교역참여 업체들에 시장가격동향과 상품수요동향, 물류동향과 수요자 및 공급자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기업간 상담을 주선하고 대정부 애로사항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임.
- 일곱째, 남북한 관계의 진전여부를 보아가면서 무역협회나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과 북한의 무역기관들 사이에 인력 파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해 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 상호 인력파견제를 통해 남북의 무역전문 일꾼들이 상대방의 무역기관이나 무역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상호 체제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하며 특히, 용어관련 조사나 언어현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일정한 단계에 가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상호인력 파견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음.
  - 인력파견제가 공식화 되자면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사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참고문헌>

KDI 북한경제팀, "2008년 남북경협에 관한 경협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KDI, 『북한경제리뷰』(2008. 7)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년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 관계론』(한울, 2005)

고일동, "최근 남북간 경협사업의 협의과정과 보완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김광록,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집

김규륜 외,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통일연구원, 2007)

김규륜,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구도," 『한독사회과학논총』, 14권 1호(2004년 여름)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보』, 10권 제1호.

김영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통일연구원, 2006)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수는 북한경제』(2008년 봄호)

김영윤,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통일연구원, 2000)

박광서, "북한의 무역관계 법규 및 실제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8호(2005)

박순성,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풀빛, 2003)

박정동, 『개발경제론: 중국과 북한의 비교』(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4호(2001)

서갑성,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44집(2007)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 23집(2008. 6)

양문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2007. 12)

양문수, "남북경협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경협정책," 『KDI 북한경제리뷰』(2008. 3)

양문수, "남북한 경제관계의 오늘과 내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관계론』(한울, 2005)

양운철,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한울, 2005)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윤대규·임을출,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한울, 2006)

이 석, 『북한경제의 대외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통일연구원, 2006)

이계만, “북한 개정 헌법상의 국가기구 변화 분석,” 『통일문제연구』(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0)

이백규, “북한의 가공무역법,” 『북한법연구』, 5호(북한법연구회, 2002)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집문당, 2003)

이석기 외,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산업연구원, 2007)

이석기,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발전계획,”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통일연구원, 2006)

이수훈 외, 『한반도경제 구상: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6)

이영훈, “남북경협에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이종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 현황,”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통일연구원, 2006)

임강택,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통일연구원, 2006)

임강택·임성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통일연구원, 2004)

임을출,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초기조건 비교: 임금·고용 법제와 실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2007년 여름호)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한울, 2000)

정영철, 2004,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사사회주의』, 선인, p.21.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선인, 2004)

정영화, “북한 경제특구법의 분석과 전망,” 『북한법연구』, 6호(북한법연구회, 2003)

조 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통일연구원, 2006)

조 민,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2006. 6)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2005)

조명철 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KIEP, 2001)

주성환·조영기,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무역경영사, 2003)

최석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8권 1호(2007)

최장호,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 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2007. 12)

통일부, 『월간교류협력동향』, 각호

통일부, 『통일백서』, 각년호

한국은행,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2004)

『개성공업지구 법규집』(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07)

『경제사전』, 1·2권(사회과학출판사, 1985)

『재정금융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5)

『조선말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법규집(외국투자부문)』(법률출판사, 2005)

『현대세계경제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8)